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층연구

arts change the world

예술지원 사업
사례비 단가조사
기초연구:
문예기금
공연예술분야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2019. 04



예술지원 사업 사례비 단가조사 기초연구: 문예기금 공연예술분야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2019. 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층연구

arts change the world

예술지원 사업
사례비 단가조사
기초연구:
문예기금
공연예술분야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2019. 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층연구

arts change the world

예술지원 사업
사례비 단가조사
기초연구:
문예기금
공연예술분야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2019. 04

**예술지원 사업 사례비 단가조사 기초연구: 문예기금
공연예술분야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 2019. 04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문예기금 공연예술사업 사례비 단가조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19년 04월 30일

주관기관 : (사)한국재정학회

연구책임자 :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5
제2장 공연예술 직업분류와 인력운영 현황	7
제1절 공연예술 부문 직업분류체계	9
제2절 공연예술 분야 인력운영 현황	13
제3장 사례비 단가조사 및 분석	17
제1절 분석개요	19
제2절 자료의 구성과 활용	20
1. 공공지원금과 사례비 제공 사업	20
2. 사업특성 자료와 사례비 정산자료	26
3. 일인당 사례비 측정단위	28
4. 자료의 가공과 활용	30
제3절 장르별·역할별 사례비 정산자료	36
1. 정산자료 상 장르 및 역할 분류	36
2. 장르별·역할별 사례비 정산자료 집계	38
제4절 장르별·역할별 사례비 수준: 통계 분석	42
1. 기본자료 분석	42
2. 확장자료 분석	45
제4장 국내외 사례 비교와 평가	61
제1절 국내 노임 단가 사례	63
1. 분석개요	63
2. 무대예술전문인 노임 단가	63
3. SW 노임 단가	66

4. 학술용역연구비 단가	70
제2절 국제비교: 영국의 공연예술 인력 인건비 기준	73
제3절 설문조사	80
1. 조사 개요	80
2. 설문내용 및 조사결과	81
제4절 심층면접 조사(FGI)	90
1. 조사 개요	90
2. 사례비 지급 실태	91
3. 사례비 책정 방식	96
4. 사례비 지원제도 운영방식	98
5. 심층면접 결과 비교	102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09
참고문헌	115

〈표 목차〉

〈표 1〉 공연예술인 직능군 분류	10
〈표 2〉 표준직업분류(통계청 6차 개정)와 공연예술 직업분류체계 간 연계표	11
〈표 3〉 2019년 문예위의 공연예술인 지원사업	20
〈표 4〉 공연예술인의 장르별 역할: 정산자료 상 구분	38
〈표 5〉 장르별 · 역할별 사례비 정산 건수	39
〈표 6〉 일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 기본자료A	42
〈표 7〉 일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 확장자료B	46
〈표 8〉 2개년도 1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 2015년 2016년 비교 자료	52
〈표 9〉 2016년도 일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 기본자료A	53
〈표 10〉 2016년도 일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 확장자료B	55
〈표 11〉 2015년도 일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 기본자료A	57
〈표 12〉 2015년도 일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 확장자료B	59
〈표 13〉 런던극장협회 배우 및 무대감독 최저 지급표	74
〈표 14〉 심층면접 조사결과 비교	106

〈그림 목차〉

〈그림 1〉 공연시설 고용형태 및 담당업무별 인력비율	13
〈그림 2〉 공연시설 담당업무별 인력비율	14
〈그림 3〉 공연단체 고용형태 및 담당업무별 인력비율	15
〈그림 4〉 공연단체 주요활동장르별 평균 인력	15
〈그림 5〉 단체특성별 담당업무별 지원인력 비율	16
〈그림 6〉 공연단체 주요활동장르별 담당업무별 지원인력 비율	16
〈그림 7〉 일인당 사례비 수준 Histogram: 확장자료B	51

요약

- (연구목적과 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연예술 분야 사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예기금의 공연예술분야 사례비 집행 자료를 장르별·역할별로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사례비 수준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분석을 수행하였음
 - 국내외 사례와 비교·평가를 위해, 공연예술 사례비 단가조사 결과를 다른 분야의 인건비 수준, 특히, 영국의 공연예술분야 사례비 기준체계와 비교하였음
 - 이외에 공연단체 실무담당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사례비 수준의 적정성 평가와 지급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정리하였음

- (통계분석 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집행 결과 중 최근 2년간(2015년과 2016년)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기획자, 제작자, 실연자, 기술 스태프 등에 대한 사례비 정산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음
 -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는 2015년과 2016년의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사업과 공연예술행사지원 사업의 사례비 집행 자료임
 - 각 장르별·역할별로 지급된 사례비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중앙값을 추정
 - 또한 각 그룹별 사례비의 표준편차, 변동계수와 같은 지표를 통해 사례비 수준의 격차와 변동성도 함께 분석하였음

- (자료 소개)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자료, 즉, 사업특성 자료와 사례비 정산 자료가 이용되었음
 - 사업특성 자료는 동일 예산코드에 속하는 다양한 세부사업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인·단체 구분부터 지원 단체의 홈페이지 주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정보들을 포함
 - 예산코드명과 사업명, 분야 및 세부분야, 공연횟수, 발표작품수 등의 항목들이 사례비 단가조사에서 특히 중요한 정보임
 - 예산지원 사업의 사례비 지급 내역을 정산 건당으로 정리한 사례비 정산 자료는

예산지원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에 지급된 사례비 정산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장르별·역할별 1인당 (1회공연) 사례비 수준을 조사할 때 핵심이 되는 자료임

- (자료의 가공) 공연예술인 개인의 1회 공연에 대한 정확한 사례비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특성 자료와 사례비 정산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data screening)을 통해 통계분석에 이용할 사례비 자료를 별도로 구축하였음
 - 기본자료(A): 공연횟수가 1회인 사업들 자료로 일인당 사례비 수준을 가장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자료
 - 확장자료(B): 기본자료(A)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공연횟수가 너무 많지 사업 중에서, 참여단체 수가 비교적 소수인 것으로 확인 가능하고 단체별 공연 횟수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여, 일인당 1회 공연 사례비가 적절히 계산 가능한 자료도 분석에 포함시키기로 함

〈장르별·역할별 사례비 분석 결과〉

- 확장자료(B)를 이용한 기초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연예술분야 사례비는 장르와 역할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일인당 평균 사례비가 21만1천원(현대무용 무대관리)~692만5천원(오페라 작곡) 구간에 위치하고 있음
 - 장르별로 볼 때, 뮤지컬, 오페라, 관현악의 경우 대다수의 역할에 대한 일인당 평균 사례비가 1백만원을 크게 상회하여, 평균 사례비 수준은 다른 장르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대무용과 연극공연 부문의 평균 사례비는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며, 연극창작극, 한국무용, 발레, 전통예술은 중간 또는 그 이하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역할별로는 작곡, 음악 감독, 작가, 안무가 등 창작진의 평균 사례비가 대체로 가장 높고, 무대 관리와 같은 기술진의 사례비가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배우나 무용수와 같은 역할의 사례비는 중간 수준에 위치)
 - 예를 들어, 뮤지컬 장르의 각색·대본이나 편곡·작곡의 일인당 사례비 평균 (350만원)은 동일 장르의 배우(80만9천원)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에

있음. 무대관리의 평균 사례비는 배우보다 낮은 수준인 64만9천원이었으며, 뮤지컬 연주는 이보다 낮은 61만1천원의 사례비를 지급받고 있음

- 유사한 역할이라도 어느 장르에 속하는지에 따라 사례비 수준은 큰 차이를 보임
 - 예를 들어, 출연진 역할의 경우, 뮤지컬 배우의 평균 사례비는 80만9천원, 현대 무용수는 78만5천원으로 높은 편이며, 연극 배우(54만7천원~60만5천원)와 오페라 가수(53만6천원)는 중간 수준에 있고, 한국 무용수(38만1천원)와 발레 무용수(38만3천원), 그리고 전통예술 배우(33만6천원)는 낮은 수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동일 장르 내 동일 역할에 있어서도 공연예술인에 대한 사례비 수준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장르의 특정 역할에 대한 사례비들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인 변동계수는 이러한 사례비의 상대적 격차를 잘 보여주는 지표임
- 변동계수가 1이상으로 나타나 사례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는 주요 장르는 뮤지컬과 오페라, 그리고 관현악 부문임
 - 이 중에서도 관현악 연주 그룹 사례비의 변동계수가 3.16으로 가장 커, 이 역할에 지급되는 사례비 격차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뮤지컬 배우와 오페라 가수 그룹 사례비의 변동계수도 각각 1.27과 1.11로 나타나, 이들 역할에 종사하는 공연예술인들의 사례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관현악 연주자나 뮤지컬 배우, 오페라 가수 등은 지명도·인기·예술적 숙련도에 따라 사례비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직능 분야로, 위 통계 결과는 이러한 특성이 실제 사례비 정산자료를 통해서도 잘 확인되고 있음을 의미함
-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세 가지 역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균 사례비 수준도 높은 편이어서, 역할 간 및 역할 내 불평등 현상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직능 분야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음
- 위 세 가지 역할을 제외한 나머지 역할 내에서는 대체로 사례비 수준의 격차가 크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연극공연과 연극 창작극, 그리고 전통예술 분야의 배우나 무용수들은 이보다 더 낮은 변동계수(0.16~0.59)를 보이고 있어, 동일 역할에 대한 사례비 격차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뮤지컬 장르의 배우와 편곡·작곡에 대한 일인당 사례비 수준의 개략적인 분포는 오른쪽으로 크게 치우친(right-skewed) 형태를 띠고 있음

- 뮤지컬 장르의 경우 소수의 지명도 높은 인기 배우와 작곡자에게 예외적으로 높게 책정된 사례비가 지급되는 시장의 특성이 있음
- 소수 공연예술인들에게 고액의 사례비가 집중되는 현상은 뮤지컬 배우나 작곡가에게 지급되는 사례비 평균의 절대적 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값과의 격차도 동시에 확대시켜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 뮤지컬 배우나 작곡가와는 달리 오페라 장르의 기획·운영 역할에 대한 사례비 수준은 정규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이 역할에 대한 사례비 수준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함을 의미함
 - 실제로 이 역할의 사례비 변동계수를 살펴보면 0.22로 다른 장르 및 역할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내 다른 분야 인건비 수준과 비교) 공연예술인 사례비 수준을 국내의 다른 분야, 무대예술전문인 노임단가, 소프트웨어 표준노임단가, 학술용역단가 등의 노임 단가와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사례비의 상대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음

- 무대예술전문인 노임 단가와 비교결과
 - 한국무용의 경우 무대관리 역할의 사례비의 평균 및 중간값은 각각 23만8천원과 24만6천원으로 2015년 기준 무대 1급 23만4천원과 큰 차이가 없음
 - 현대무용의 경우에도 무대관리 사례비 평균 및 중간값이 21만1천원과 23만2천원으로 무대전문예술인 노임단가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한편, 뮤지컬의 경우에는, 일인당 사례비 수준의 평균값이 64만9천원, 중간값은 41만9천원으로 무대전문예술인 노임단가보다 더 높은 값을 보임
 - 오페라 장르 역시 노임단가 기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SW 표준노임단가와 비교결과

- 지휘자의 일인당 사례비의 평균과 중간값은 각각 148만1천원과 94만2천원으로 기술사의 일인당 사례비 수준(46만2천원)보다 높은 값을 보임
-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공연자의 경우에는 SW 기술사보다 일인당 사례비 수준이 높음
- 초급기술자의 노임단가는 21만5천원으로 한국무용, 현대무용, 창작극, 전통예술등 대다수 장르의 무대관리 역할 사례비의 평균 및 중간값과 유사함
- 그러나 초급기술자의 노임단가는 오페라 장르의 무대관리 역할의 사례비의 평균 46만7천원이나 중간값 48만3천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오페라 장르보다 높은 수준의 사례비 값을 보이는 뮤지컬 장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학술연구용역연구비 단가와 비교결과

- 우선, 뮤지컬 장르 연출의 경우 일인당 사례비 수준의 평균 및 중간값은 각각 185만6천원과 174만1천원으로 책임연구원 용역 단가 316만9천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오페라 연출의 경우에도 중간값이 265만9천원으로 여전히 책임연구원 용역 단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오페라 조연출의 경우 사례비 평균값과 중간값은 각각 139만4천원과 145만원으로, 연구원의 용역 단가 243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

<영국의 공연예술 분야 인건비 체계와 비교>

□ SOLT-Equity 협약에 따른 인건비 체계

- 런던 극장 협회(Society of London Theatre)에서는 매년 소속 공연예술인들의 인건비 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
- 배우, 대역, 연주자, 무대감독의 최저주급(minimum weekly wage)을 설정
- 공연횟수 및 공연장 규모에 따라 일차적으로 인건비 수준을 구분
- 무대감독의 경우에는 숙련도별로 무대조감독(Assistant Stage Manager), 무

대부감독(Deputy Stage Manager), 무대감독(Stage Manager)로 구분하여 최저주급을 설정

□ 우리나라 공연예술인 사례비와 비교

- 우리나라 공연사례비와 영국의 공연예술 인력 인건비 기준체계의 가장 큰 차이는 사례비 지급 기준의 단위에 있음
 - 공연횟수나 축제 건수별로 지급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주당 공연횟수 및 객석 규모를 토대로 최저주급을 산정하고 지급
- 1회 공연 기준 사례비 수준을 단순 비교하면, 런던 웨스트 앤드 극장 배우의 가장 높은 최저주급은 1회 공연당 68파운드(원화 기준 약 11만 원)로 우리나라 연극공연 장르의 배우 1회 공연 평균 사례비 605,000원의 약 18%에 불과
- 그러나 우리나라 공연예술인에게는 공연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정기적인 사례비가 단발성으로 제공되는 것과 달리, 영국 런던 웨스트앤드의 공연예술 인력은 계약을 통해 매주 최소 813파운드의 급여를 보장 받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영국에서 최소규모 공연의 최저주급은 568파운드로, 월 2274파운드(원화 기준 약 338만원)의 최저사례비가 보장됨
- 사례비가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우리나라에 비해, 영국의 공연예술인들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함을 의미
- 영국에서 공연예술인의 급여는 역할 및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 간 최저주급의 수준 차이는 그리 심하지 않음
 - 배우 및 무대 조감독의 최저주급은 568파운드로, 같은 조건 하의 무대감독 최저주급 688파운드보다 120파운드 정도 낮은 수준
 - 공연횟수 및 공연장 규모 조건이 달라져도, 숙련도 및 역할 간 최저주급 차이는 동일하게 유지됨
- 이외에 우리나라 공연예술인에 대한 사례비 지급에서는 초과수당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지만, 영국의 공연예술인들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을 최저주급의 1/45에서 1/40수준 이상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설문조사 결과)공연예술인의 사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장르별·역할별 적정 및 최소 사례비 수준 및 주요 사례비 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공연단체 운영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
- 무용, 뮤지컬, 연극, 오페라, 전통예술 등 5개 장르 22개 공연단체 중 17개 단체가 응답(응답률 약 77%)
 - 3장의 사례비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작품 창작진의 일인당 사례비 수준이 공연 출연진의 일인당 사례비 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 장르별로 공연 출연진에 따라 평균 사례비 수준에 차이가 있음
 - 무용수의 사례비는 다소 높은 수준에, 배우는 그보다 낮은 수준에 주로 분포
 - 사례비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경력' 이 전체 응답의 38.9%를 차지하여, 동일 역할에 대한 사례비는 주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됨을 알 수 있음
 - 희망하는 적정 사례비는 대체로 평균 사례비에 대한 응답 결과와 유사한 수준
 - 역할에 따른 적정사례비에서도, 작품 창작진에 대한 적정 사례비 수준이 공연 출연진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희망하는 최소사례비 수준은 대체로 적정 사례비보다 약간 낮은 수준
 - 역할 비중 및 경력에 따라 희망하는 최소 사례비의 수준이 달라짐
 - 적정사례비 수준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70%가 경력에 따라 적정 사례비 수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답함
 - 이외에 또 역할 비중, 인지도, 성과 등도 중요하다고 응답함
 - 최소사례비 역시 경력에 따라 수준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56%로 가장 많음
 - 다만, 적정사례비와 달리, 경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소 사례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31%) 존재
 - 최소사례비보다는 적정사례비가 표준 사례비를 위한 현실적 기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2%를 차지하였음
 - 최소사례비 개념이 표준사례비의 기준으로 타당하다는 의견도 31%를 차지

- (심층면접 조사결과) 연극, 무용, 뮤지컬, 현대음악, 전통예술의 5개 분야에서 대표적인 공연예술 단체를 운영하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
 - 서면조사 방식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세부적인 사항이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한층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의견 청취가 이루어짐
 - 심층조사는 사례비의 지급실태와 결정체계, 그리고 지원방식이라는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심층면접 조사결과 요약 및 비교

- 사례비의 상대적 수준: 연극 부문의 사례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편이고 뮤지컬계가 가장 높다고 평가
 - 무용계의 사례비 수준은 연극 부문보다는 높고, 전통예술 부문은 연극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함
- 사례비 수준의 적절성: 뮤지컬 부문을 제외한 모든 공연기획 운영진들이 현재의 사례비 지원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답하였음
- 사례비 책정방식: 연극, 뮤지컬, 전통예술 부문에서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시장 가격이 사례비 수준을 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반면, 무용계는 관행이나 전례를 따른다고 말함
- 사례비 결정요인: 공연예술인에 대한 사례비 수준의 차이가 경력, 지명도, 전문성 중 어떤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장르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연극: 창작진에게는 작품 당 미리 정해진 기준에 의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고, 연출·기술진은 팀의 전문성, 지명도, 인지도에 비례하여 사례비가 결정. 배우는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무용: 무용수의 사례비 수준은 대체로 경력과 무관하며 일률적인 방식에 따라 사례비가 지급되는 편인데, 다만, 공연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출연진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이 적용됨

- 뮤지컬: 창작·연출진의 사례비 수준은 주로 지명도나 인지도 또는 최근 흥행 성적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배우의 사례비 결정에서도 경력보다는 지명도와 인지도, 최근 흥행성적 등이 중요함
 - 전통예술: 경력이나 공연에서의 역할, 자질 등에 따라 사례비 수준이 차등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지급금액에 큰 차이는 없음
- 사례비 지원 금액 결정과정과 관련해서 뮤지컬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금 교부·집행 시 구체적인 사례비 총액과 각 역할에 따른 사례비 단가가 동시에 조정된다고 응답하였음
 - 현대음악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문예위 차원의 암묵적인 사례비 책정기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사례비의 상·하한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단체가 많았음
 - 뮤지컬 공연단체는 지원금 규모에 따라 사례비가 영향 받을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은 편이며, 배우 사례비에 대한 상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힘
 - 지원금 지급 요건에 관해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절차도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하며, 사례비 책정에서 단체의 재량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말함
 - 이외에도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익명성에 기초한 심사과정의 중립성 보장, 그리고 사례비 차등 지급을 위한 세밀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공연 참여 인원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 총액이 결정되고, 단체의 공연실적에 따른 지원금의 차등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제1장

서론

제1절 :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 연구내용과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공정하고 활력 있는 공연 예술시장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공연예술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이 중요함
 -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와는 괴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공연노조에 따르면, 공연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공연예술인들은 불과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공연 배우의 80%는 1인 중위 소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고 있으며 시급제 부업을 통해 생계와 공연활동을 힘겹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이유로 공연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는 예술 활동을 통한 생계보장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음

-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연예술 산업계 내에 공정임금 체계의 도입이 시급함
 - 즉, 적정 수준의 인건비가 정해지고, 이것이 공연예술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지급되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공연노조는 3대 권리운동으로 기본소득 보장 및 기초예술진흥법 입법화와 더불어 예술인 최저임금제 실시를 주장한 바 있음
 - 표준인건비 제도나 최저시급제 등의 정책은 표준계약서 제도와 더불어 예술인이 불공정한 임금계약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 두 가지 정책은 모두 선결요건으로 적정 인건비 수준의 파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문예기금의 각종 지원금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공공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음
 - 반면, 지원금 심사 시 일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여전히 미흡하여, 지원금의 현실적인 책정과 경비집행에 있어서 적절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음
 - 문예기금의 경우, 지원금 교부 시 사례비 등 예술 활동의 간접경비에 대한 단가

기준이 있으나, 그 수준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인건비 기준 마련이 시급함

- 사례비나 인건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모델은 예술인 활동 지원에 투입되는 문예 기금의 경비 집행 및 평가 시 투명성을 유도하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음
 - 특히, 예술인 활동 지원금의 교부 및 정산 과정에서 효과적인 검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공연예술계의 현실적 상황을 감안한 적절한 수준의 사례비 기준 모델 수립은 예술인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요건의 수입을 획득하여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영위하는데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공연예술 분야 사례비 지급 수준을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있음
 - 공연예술 활동에 대한 사례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예술 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사례비에 대한 기준, 즉, 표준 인건비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공연예술 부문의 사례비와 인건비는 예술 활동 지원의 가장 중요한 지출항목임에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매우 미흡하기에, (시장)가격 표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공연예술 분야 사례비 조사결과는 사례비 지급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 모델 도출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사례비 기준 모델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연예술 현장에서 직접 통용되는 각종 단가를 자세히 조사·분석하는 것은 물론, 공연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도 중요함
 - 이러한 의견은 향후 예술인을 위한 적정 수준의 표준 인건비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지원정책에서 효과적인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3부분으로 구성

- 공연예술 직업분류와 인력운영 현황
 - 공연예술인의 범위와 직업분류체계
 - 공연예술 분야 인력운영 현황
- 사례비 단가 조사 및 분석
 - 사례비 집행 자료: 사례비의 개념, 문예기금의 사례비 지급자료 소개
 - 단가조사 및 통계분석: 각 장르별·역할별 사례비 수준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 국내외 사례 비교 및 평가
 - 국내 타 분야 노임 단가와 비교: 무대예술전문인 노임 단가, SW 노임 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영국의 공연예술 인건비 기준
 - 공연단체 설문조사
 - 실무담당자 심층면접 조사

□ 연구방법

- 통계분석
 - 문예기금의 사례비 집행 자료를 장르별·역할별로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사례비 수준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분석을 수행
- 사례조사
 - 공연예술 이외의 분야에서 이용되는 인건비 기준과 비교
 - 영국의 공연예술분야 사례비 기준체계와 비교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 설문조사를 통해 공연예술 종사자들의 기대 사례비 수준 파악
 - 공연예술인 단체 실무담당자 대상 심층 인터뷰

□ 활용방안

- 본 연구를 통해 집계 조사된 사례비 자료는 향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인적 경비의 표준 모델 도출에 이용될 수 있을 것임
- 객관적인 사례비 단가 조사결과는 문화예술분야에 투입되는 예술인 지원금의 경비집행 및 평가 시 투명성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음

제2장

공연예술 분야 직업분류와 인력운영 현황

제1절 : 공연예술 부문 직업분류

제2절 : 공연예술 분야 인력운영 현황



제1절 공연예술 부문 직업분류

- 공연예술 활동에 지급되는 사례비의 단가를 조사하기에 앞서 공공기금에 의한 사례비 지원 대상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공연예술인의 개념을 공연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으로 확대하면, 예술인의 범주는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 이외에, 기획·경영 지원인력, 무대·기술 지원인력, 행정 지원인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됨
 - 이러한 지원 인력은 좁은 의미의 예술인으로 분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들의 활동에 대한 수당이나 보수 또한 인건비보다는 광의의 사례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 공연예술인 포괄범위: 연극 장르의 사례
 - 협의의 공연예술인
 - 창작: 극작가
 - 연출·연기: 연출가, 배우
 - 광의의 공연예술인
 - 창작: 무대감독, 무대미술가, 무대조명디자이너, 무대음향디자이너, 무대의상디자이너, 소품디자이너
 - 무대 기술 지원: 무대기계조작원, 무대조명기구조작원, 무대음향기구조작원, 무대의상 및 소품 관리원
 - 기획·경영 지원: 공연기획자, 마케터
 - 행정 지원: 하우스매니저, 예산 및 회계 담당자 등
 - 연극 제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 관련 직군: 연극평론가, 연극교육가 등

- 무대미술가나 무대조명디자이너, 무대음향디자이너, 무대의상디자이너 등은 실제 연극 작품의 예술적 창조에 참여하므로 창조예술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프랑스의 공연예술 분야의 앙페르미팡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공연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이 제도 가입 대상으로 설정
- 예술교육에 종사하는 인력을 예술인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
 - 가능하다면 예술인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공연예술 교육자나 비평가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아래의 표는 공연예술인의 범위를 기본적인 직능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인데, 여기에 교육자과 비평가군을 별도의 직능군으로 추가할 수 있음

<표1> 공연예술인 직능군 분류

Entrepreneur	제작자	극장주	프로듀서	
저작권 소유 가능 직능군	작가	연출가	음악	무대디자이너
	-대본작가 -드라마트루기 -뮤지컬작사가	-연극연출가 -뮤지컬연출가 -콘서트연출가 -다원예술연출가 -창극연출가 -무용극연출가 -기타연출가	-작곡가 -편곡자 -음악감독 -지휘자 -연주자	조명디자이너 의상소품디자이너 분장디자이너 영상디자이너
	Performer			안무 수퍼바이저
	연극배우 뮤지컬배우 무용가 행위예술가			
	Technician			
	무대감독 기술감독 음향감독 특수효과	장치제작 크루 오퍼레이터		
	Planning & Marketing			
	기획 홍보 마케팅	하우스매니저		
	Assistant			
	조연출 보조작가 기타 직능군별 보조			

출처 : 장지연 (2014)

- 황준욱 외(2008)에서는 공연예술인의 직무를 예술적·기술적·사무적 작업을 중심으로 크게 6개 직군으로 분류하였음

- 공연기획 및 제작 직군: 프로듀서,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이외 기획·제작 직무
- 창작 스태프 직군: 극작가, 연출가, 안무가, 조명디자이너, 음향디자이너, 무대 디자이너, 이외 창작 스태프 직무 등 7가지 직무로 구성
- 출연자 직군: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의 3가지 직무들이 속함
- 기술 스태프 직군: 기술감독, 제작감독, 무대감독, 무대장치 스태프, 음향 스태프, 조명 스태프, 의상 스태프, 소품 스태프, 전환수, 이외 기술 스태프 등 10가지 직무들이 있음
- 공연운영 스태프 직군: 공연장 대관, 시설관리, 경영지원, 이외 공연운영 등 4가지 직무들로 나뉨
- 교육 및 평론 직군: 공연 관련 교육, 평론 및 연구, 이외 교육 및 평론 직무 등 3가지 직무로 구성

□ 황준욱·안주엽·이정현(2014)에서는 공연예술 직업분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계청의 표준직업분류와 비교하였음

<표2> 표준직업분류(통계청 6차 개정)와 공연예술 직업분류체계 간 연계표

초안(직업)	표준직업분류	
	코드	직업명
프로듀서/예술감독	134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28311	감독 및 연출가
극작가	28112	작가 및 평론가
작곡/편곡/작사가	28443	국악작곡 및 편곡가
	28452	작곡가 및 편곡가
연출가	28311	감독 및 연출가
안무가	28472	안무가
조명디자이너	28312	기술감독
음향디자이너	28312	기술감독
무대디자이너	28312	기술감독
	28533	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
소품디자이너	28312	기술감독
의상디자이너	28312	기술감독
	28522	의상 디자이너
분장/헤어 디자이너	28312	기술감독
영상디자이너	28312	기술감독
	28421	사진작가

초안(직업)	표준직업분류	
	코드	직업명
특수효과디자이너	28312	기술감독
음악감독	28319	그 외 감독 및 연출가
지휘자	28451	지휘자
연주자	28442	국악 연주자
	28453	연주자
배우	28321	배우
무용가	28444	전통 예능인
	28471	무용가
가수	28441	국악인
	28461	가수
	28462	성악가
이외 예술관련 직업		
기술감독 및 스태프	28312	기술감독
제작감독 및 스태프	28312	기술감독
무대감독 및 스태프	28312	기술감독
음향감독 및 스태프	28312	기술감독
	28350	음향 및 녹음 기사
조명감독 및 스태프	28312	기술감독
	28371	조명기사
의상감독 및 스태프	28312	기술감독
	28391	무대의상 관리원
소품감독 및 스태프	28312	기술감독
	28392	소품 관리원
영상감독 및 스태프	28312	기술감독
	28340	촬영기사
	28360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특수효과 감독 및 스태프	28312	기술감독
분장/ 헤어감독 및 스태프	28312	기술감독
	42220	미용사
	42241	메이크업 아티스트
	42242	특수 분장사
	42243	분장사(영화)
이외 기술관련 직업		
공연기획자	27351	이벤트 전문가
홍보마케터	27331	광고 전문가
	27332	홍보 전문가
시설관리자		
경영지원자		
이외 기획운영관리관련 직업		
공연관련 교육자	25117	예·체능계열 교수
	25127	예·체능계열 시간강사
	25441	음악 강사
	25443	무용 강사
공연관련 비평가	28112	작가 및 평론가
이외 교육/비평관련 직업	28143	칼럼니스트

출처: 황준욱 · 안주엽 · 이정현(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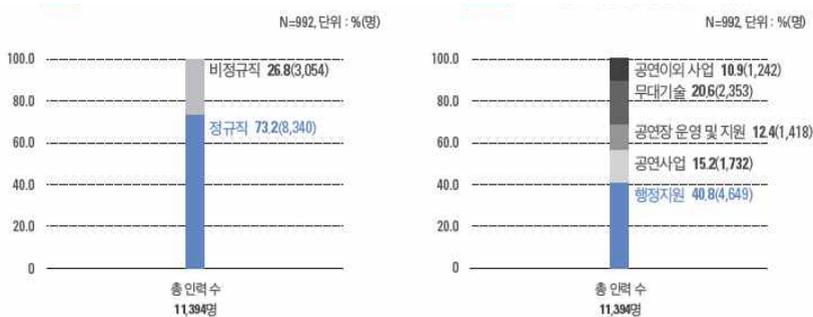
제2절 공연예술 분야 인력운영 현황

□ 2017 공연예술실태조사에 나타난 공연예술 분야 인력운영 현황을 공연시설과 공연단체 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공연시설 부문 연간인력 현황

- 공연시설의 총 인력 수는 11,394명으로 추정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8,340명으로 전체의 73.2%, 비정규직은 3,054명으로 전체의 26.8%
- 담당업무별로 살펴보면, 행정(경영)지원 4,649명(40.8%), 공연사업 1,732명(15.2%), 공연장 운영 및 진행 1,418명(12.4%), 무대기술 2,353명(20.6%), 공연이외 사업 1,242명(10.9%)으로 추정

<그림1> 공연시설 고용형태 및 담당업무별 인력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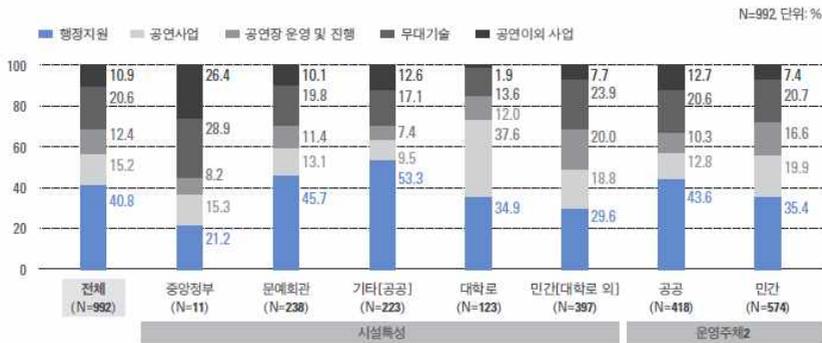
□ 공연시설 부문 담당업무별 인력현황

-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행정(경영)지원 인력과 무대기술 인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7대 권역별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지원 인력은 충청에서 52.8%로 높았음

며, 공연사업 인력은 서울 19.0%, 공연장 운영 및 진행 인력은 경상 18.4%, 무대기술 인력은 서울 24.6%, 공연이외 사업 인력은 제주 21.6%에서 높게 나타났음

- 시설특성별로 살펴보면, 기타[공공] 시설의 행정(경영)지원 인력 비율이 53.3%로 가장 높고, 공연이외 사업 인력은 중앙정부 시설이 26.4%로 가장 높았음
-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공공시설은 행정(경영)지원 인력, 공연이외 사업 인력의 비율이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연사업, 공연장 운영 및 진행 인력의 비율은 민간시설이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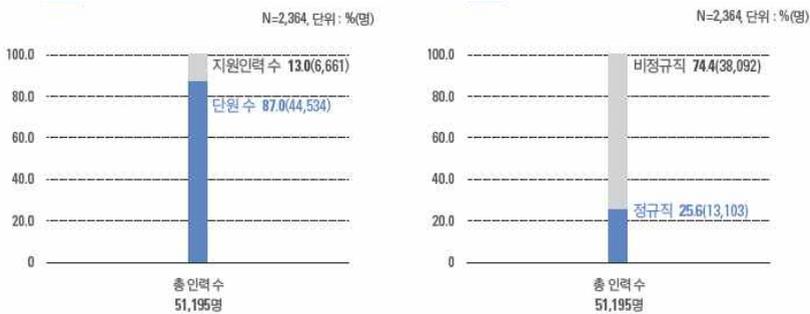
<그림2> 공연시설 담당업무별 인력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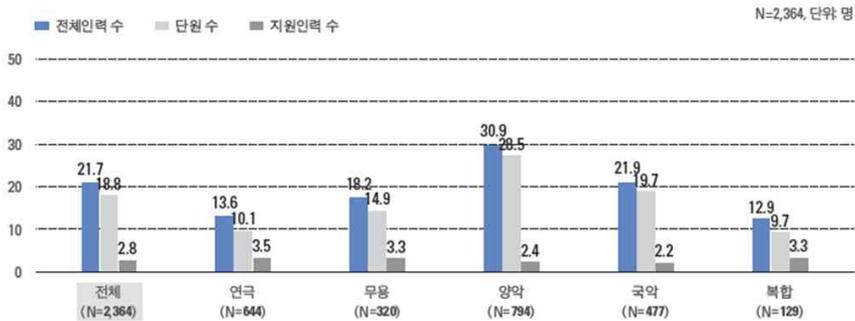
□ 공연단체 부문 연간인력 현황

- 공연단체의 총 인력 수는 51,195명으로 추정
- 이 중 단원은 44,534명으로 전체의 87.0%, 지원인력은 6,661명으로 전체의 13.0%를 차지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13,103명으로 전체의 25.6%, 비정규직은 38,092명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

<그림 3> 공연단체 고용형태 및 담당업무별 인력비율



<그림 4> 공연단체 주요활동장르별 평균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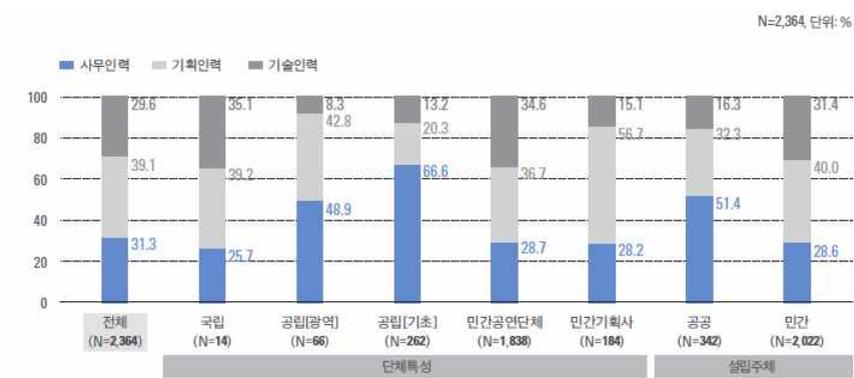


□ 공연단체 담당업무별 지원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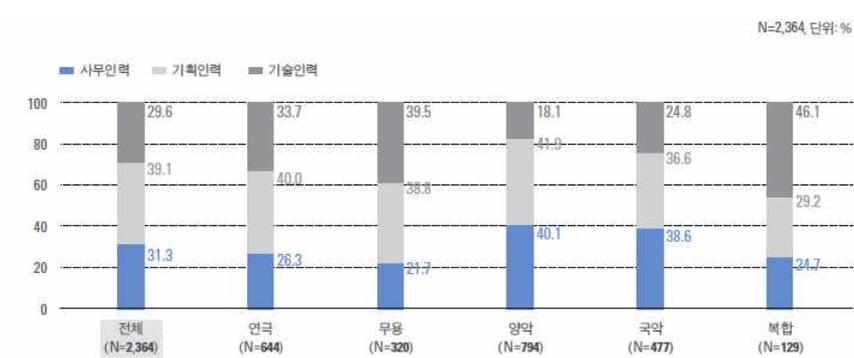
- 담당업무별 지원인력 현황을 단체특성별로 살펴보면, 공립[기초]단체, 공립 [광역]단체는 사무인력 비율이 각각 66.6%, 48.9%로 타 업무인력 비중보다 높았으며, 국립, 민간공연단체, 민간기획사는 기획인력이 각각 39.2%, 36.7%,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주요활동장르별로는 사무인력은 양악과 국악 장르에서 각각 40.1%, 38.6%로 높게 나타났고, 기획인력은 양악과 연극 장르에서 각각 41.9%, 40.0%, 기술인은 복합장르에서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사무인력은 제주와 강원이 각각 49.9%, 43.0%로 높게 나타났고,

기획인력은 전라 46.2%, 기술 인력은 경상이 33.3%로 가장 높음

<그림 5> 단체특성별 담당업무별 지원인력 비율



<그림 6> 공연단체 주요활동장르별 담당업무별 지원인력 비율



제3장

사례비 단가조사 및 분석

제1절 분석개요

제2절 자료의 구성과 활용

1. 공공지원금과 사례비 제공 사업
2. 사업특성 자료와 사례비 정산 자료
3. 일인당 사례비 측정단위
4. 자료의 가공과 활용

제3절 장르별·역할별 사례비 정산자료

1. 정산자료 상 장르 및 역할 분류
2. 장르별·역할별 사례비 정산자료 집계

제4절 장르별·역할별 사례비 수준: 통계 분석

1. 기본자료 분석
2. 확장자료 분석



제1절 분석개요

- 본 장에서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국악) 등의 분야에서 공연예술 활동에 제공되는 사례비 지급 실태를 실제자료를 통해 조사·분석하고자 함
 - 각 장르별 사례비의 표준 금액과 범위를 조사·비교함으로써, 추후 사례비 지급 기준 모델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목적임
 - 조사된 사례비나 기준모델은 각종 공공지원 사업 정산에 이용되는 지침을 제시하거나, 원활한 정산심사 진행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과거 지원금 집행 결과 중 최근 2년간(2015년과 2016년)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정산자료를 분석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최근 2년간 사례비 집행결과를 분석해 기획자, 제작자, 실연자, 기술 스태프 등에 대한 사례비 지원 수준을 분석

- 통계분석의 주요 내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사례금 집행 정산 결과를 장르별·역할별로 분류한 후, 사례비 수준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
 - 각 장르별로 기획자, 제작자, 실연자, 기술 스태프 등에게 지급된 사례비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중앙값을 추정
 - 또한 각 그룹별 사례비의 표준편차, 변동계수와 같은 지표를 통해 사례비 수준의 격차와 변동성을 분석

제2절 자료의 구성과 활용

1. 공공지원금과 사례비 제공 사업

□ 문화예술위원회가 공연예술인에게 공공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들은 다음과 같음

<표3> 2019년 문예위의 공연예술인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장르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공연예술 공통	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	•	•	•
	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	•	•	•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	•	•	•
	공연장대관료지원	•	•	•	•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	•	•	•
연극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			
	창작산실) 올해의레퍼토리	•			
무용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		
	창작산실) 올해의레퍼토리		•		
음악	창작산실) 오작교프로젝트			•	
	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	
오페라	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	
전통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
	창작산실) 올해의레퍼토리				•
창작 뮤지컬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			
	창작산실) 올해의레퍼토리	•			
	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			
국제예술 교류	예술가해외 레지던스지원	•	•	•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	•	•	•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	•	•	•
예술인력 육성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공연예술, 기획(aPD), 무대예술)	•	•	•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	•	•	•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	•	•	•

주: 문화예술위원회

- 공공지원 사업 중 사례비가 지급된 사업들은 공식적인 예산코드 명에 따라 분류되고 집계되는데, 이를 정리한 결과를 공공지원금 제공 사업 예산코드표라 부름
 - 예를 들어, 아래의 표는 ‘예술창작역량강화 단위사업’에 속하는 사업들의 공식적인 예산코드 명을 보여주고 있음

단위사업코드	예산코드	연도	단위사업명	예산코드명
GE1661000000	GE16613011302	2013	예술창작역량강화	2013 공연예술분야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GE16613021103		예술창작역량강화	ARKO-PAMS협력사업지원
	GE16613021106		예술창작역량강화	ARKO-PAMS협력사업지원-2차
	GE16613021107		예술창작역량강화	ARKO-PAMS협력사업지원-3차
	GE16613011301		예술창작역량강화	AYAF-공연예술
	GE16613011101		예술창작역량강화	AYAF-문학
	GE16613011401		예술창작역량강화	AYAF-신진예술가이력관리시스템운영

주: 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 예산코드 자료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사업연도와 예산코드 명이며, 특정 연도에 어떠한 예산코드를 가진 사업들이 진행되었고 또 다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예산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 공공지원 사업 전체 예산코드표에 따르면, 5년간 총 413종류의 지원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는 2013년 55종류, 2014년 103종류, 2015년 79종류, 2016년 92종류, 2017년 84종류의 지원 사업이 진행
 - 다만, 자료 해석 시 1개의 예산코드 명이 1건의 예산지원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함
 - 1개의 예산코드 명은 여러 개의 지원 사업을 하나의 예산코드 아래 대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음

□ 2015년 공연예술분야 공공지원 사업 예산코드표

- 사업년도: 2015년
- 단위사업코드: GE1661000000

예산코드	단위사업명	예산코드명
GE16613022103	예술창작역량강화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참가지원-2차
GE16613022102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참가지원
GE16613002503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
GE16613003609		창작뮤지컬육성지원(인력육성)
GE16613003610		창작뮤지컬육성지원(유동지원)
GE16613003605		창작뮤지컬육성지원(우수제공연)
GE16613003604		창작뮤지컬육성지원(우수공연)
GE16613003611		창작뮤지컬육성지원(연구용역)
GE16613003606		창작뮤지컬육성지원(아르코창작아카데미)
GE16613003607		창작뮤지컬육성지원(시범공연-청소년)
GE16613003603		창작뮤지컬육성지원(시범공연-일반)
GE16613003608		창작뮤지컬육성지원(사업운영)
GE16613003602		창작뮤지컬육성지원(대본공모)
GE16613003612		창작뮤지컬육성지원(광복70주년기념)
GE16613003807		정부시상 경연대회 평가 지원
GE16613022301		전통예술텍스트번역및해외전통예술보급지원
GE16613015101		전통예술기획자양성프로젝트
GE16613013101		전문무용수센터지원
GE16613004202		융복합예술창작지원
GE1661300120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GE16613001101		아르코문학창작기금
GE16613002201		시각예술행사지원
GE16613002101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
GE16613002301		시각예술 비평 연구 활성화 지원
GE16613022110		서울아트마켓지원
GE16613002501		사립미술관네트워크활성화
GE16613022101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및전시
GE16613021108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4차
GE16613021107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3차
GE16613021102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GE16613021101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1차
GE16613022205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5차
GE16613022204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4차
GE16613022203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3차
GE16613022202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2차
GE16613022201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
GE16613003308		미등록공연장 전환지원
GE16613014102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평가 운영 대행기관지원
GE16613014101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GE16613001501		문학행사 및 연구지원
GE16613001401		문학창작 집필 공간 지원
GE16613003801		문예회관공연유통활성화지원(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GE16613003803		문예회관공연유통활성화지원(문예회관종합컨설팅지원)
GE16613003802		문예회관공연유통활성화지원(문예회관운영현황조사)
GE16613003804		문예회관공연유통활성화지원(문예회관아카데미)
GE16613003303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무대예술전문인력뱅크)
GE16613003302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GE16613002502		등록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

GE16613003301	대관료지원사업
GE16613004201	다원예술창작지원
GE16613022107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노마드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GE16613022106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
GE16613021103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GE16613003716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음악-지속연주지원사업)
GE16613003710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음악)
GE16613003713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오페라-우수작품제공연)
GE16613003715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오페라-아트코창작아카데미)
GE16613003711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오페라-시범공연)
GE16613003714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오페라-선비)
GE16613003703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우수작품제작)
GE16613003704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우수작품제공연)
GE16613003702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시범공연)
GE16613003701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대본공모)
GE16613003717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무용-향연)
GE16613003707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무용-우수작품제작)
GE16613003708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무용-우수작품제공연)
GE16613003706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무용-시범공연)
GE16613003709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공통)
GE16613003806	공연예술실태조사
GE16613003201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GE16613003310	공연예술분야전문인력 사업평가 운영 대행기관지원
GE16613003309	공연예술분야전문인력 교육운영 대행기관지원
GE16613003305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GE16613011204	AYAF-헤어리서치트립(기획형)
GE16613011202	AYAF-시각예술(큐레이터)
GE16613011201	AYAF-시각예술(작가)
GE16613011301	AYAF-공연예술(창작자)
GE16613021105	ARKO-PAMS협력사업지원-2차
GE16613021104	ARKO-PAMS협력사업지원-1차

주: 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 2015년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사업: 분석대상

- 2015년도 79종류의 예산코드별 사업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된 사업 데이터 상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총 19종류의 사업이었음
- 이 중에서도 각 공연예술 장르별로 우수 작품들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인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사업은 사업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지원 사업 항목이 가장 많은 사업에 해당하여, 본 장의 분석대상으로 설정되었음

□ 2016년 공연예술분야 공공지원 사업 예산코드표

- 사업년도: 2016년
- 단위사업코드: GE1661000000

예산코드	단위사업명	예산코드명
GE16613021102	예술창작역량강화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2차
GE16613021101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1차
GE16613022112		한-영 리서치지원(기획)
GE16613022111		한-영 리서치지원
GE16613002111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시각예술
GE16613001102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문학
GE16613003162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공연예술(오페라2기)
GE16613003163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공연예술(공동창작)
GE16613003161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공연예술
GE16613002301		코리아아티스트프로젝트
GE16613022108		창작오페라 선비
GE16613003305		창작뮤지컬육성(인력육성지원)
GE16613003309		창작뮤지컬육성(유통지원-일반공모)
GE16613003308		창작뮤지컬육성(유통지원)
GE16613003304		창작뮤지컬육성(우수제공연)
GE16613003303		창작뮤지컬육성(우수공연)
GE16613003302		창작뮤지컬육성(시범공연)
GE16613003310		창작뮤지컬 등 공연예술 향유기회 확대
GE16613003133		전통창작산실-전통기희양성프로젝트
GE16613003132		전통창작산실-우수공연
GE16613003131		전통창작산실-시범공연
GE16613011301		전문무용수센터지원
GE16613003122		음악.오페라창작산실-음악(지속연주지원)
GE16613003121		음악.오페라창작산실-음악(오작교프로젝트)
GE16613003129		음악.오페라창작산실-오페라(창작오페라발굴 지원)
GE16613003128		음악.오페라창작산실-오페라(우수작품 제작지원)
GE16613003126		음악.오페라 창작산실-오페라(시범공연)
GE16613003502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주관처)
GE16613003501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GE16613003601		원로연극제
GE16613003701		원로금빛제전
GE16613003104		연극 창작산실(일반)-우수제공연
GE16613003103		연극 창작산실(일반)-우수공연
GE16613003102		연극 창작산실(일반)-시범공연
GE16613003152		어린이청소년 연극 창작산실-우수공연
GE16613003151		어린이청소년 연극 창작산실-시범공연
GE16613003154		어린이청소년 연극 창작산실-기획사업
GE16613002107		시각예술창작산실(지역순회)
GE16613002102		시각예술창작산실(전시지원)
GE16613002105		시각예술창작산실(전시지원 2차)
GE16613002104		시각예술창작산실(비평지원)
GE16613002106		시각예술창작산실(리서치 지원)
GE16613002103		시각예술창작산실(공간지원)
GE16613002101		시각예술창작산실
GE16613011501		사립미술관전문인력운영지원
GE16613022301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
GE16613003311	방송활용 창작뮤지컬 붙임	
GE16613011403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현장평가 및 모니터링	
GE16613011401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GE16613001106	문학활성화프로그램	
GE16613001301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GE16613003113	무용 창작산실-우수제공연	
GE16613003112	무용 창작산실-우수공연	
GE16613003111	무용 창작산실-시범공연	
GE16613011601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GE16613011201	무대예술전문교육
GE16613001104	기간문학단체지원
GE16613022103	국제예술교류지원-3차
GE16613022102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GE16613022101	국제예술교류지원-1차
GE16613022106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협력
GE16613022113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3차
GE16613022109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2차
GE16613022105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1차
GE16613022114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2차
GE16613022104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GE16613022107	구리 월드아트 디자인페어
GE16613003405	공연예술행사지원(해비치아트페스티벌)
GE16613003404	공연예술행사지원(한국창작음악제)
GE16613003403	공연예술행사지원(전국무용제)
GE16613003401	공연예술행사지원(일반공모)
GE16613003408	공연예술행사지원(신년음악회)
GE16613003410	공연예술행사지원(서울국제무용콩쿠르)
GE16613003409	공연예술행사지원(서울국제공연예술제)
GE16613003412	공연예술행사지원(무송원탄신 600주년 류전국악극 칠경산)
GE16613003413	공연예술행사지원(독도사망 축제 지원)
GE16613003406	공연예술행사지원(대한민국오페라축제)
GE16613003402	공연예술행사지원(대한민국연극제)
GE16613003407	공연예술행사지원(대한민국발레축제)
GE16613003411	공연예술행사지원(대한민국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GE16613011603	공연예술전문인력 사업평가 운영대행기관 지원
GE16613003134	공연예술신기술융합기획프로젝트
GE16613003141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GE16613021107	공연예술 해외진출 기반 마련
GE16613011602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GE16613002103	(테스트사업지원금지)시각예술전시지원
GE16613002104	(테스트사업지원금지)시각예술비평지원
GE16613002105	(테스트사업지원금지)시각예술공간지원
GE16613021106	(기획형)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3차
GE16613021105	(기획형)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2차
GE16613021104	(기획형)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1차
GE16613021114	(기획형)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기획)

주: 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 2016년 공연예술행사지원 및 장르별 창작산실육성지원 사업: 분석대상

- 2016년도는 총 92종류의 예산코드별 사업을 통해 공연예술분야를 지원하였으며, 이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된 사업데이터 상에서 세부지원사업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총 35종류의 사업이었음
- 예산코드명에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사업들이 핵심을 이루었던 2015년도와 달리, 2016년도에는 ‘공연예술행사지원’ 또는 ‘무용창작산실’ 등과 같이 ‘장르별 창작산실’이라는 예산코드명의 지원

사업들이 핵심을 이루었음

- 사실상 2015년의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사업이 2016년에 공연예술 행사지원, 창작뮤지컬육성, 무용창작산실 등으로 세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2. 사업특성 자료와 사례비 정산 자료

- 동일한 예산코드가 부여되는 개별 예산지원 사업들의 진행 건수 및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사업특성 데이터를 참조해야 함
 - 예를 들어, 2016년 사업데이터 자료를 보면, 예술창작역량강화 단위사업의 예산코드명 ‘공연예술행사지원(일반공모)’에는 아래와 같은 축제 및 공연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개인/단체	사업관리번호	단위사업명	예산코드명	사업명
단체	201643011	공연예술행사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일반공모)	2016 *** 페스티벌
단체	201642563	공연예술행사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일반공모)	*** 10주년 기념행사
단체	201642795	공연예술행사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일반공모)	제35회 *** 국악제
단체	201640685	공연예술행사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일반공모)	2016 신춘문에 ***

- 사업특성 데이터 자료의 구체적인 형식과 상세 내용
 - 사업데이터 자료는 동일 예산코드에 속하는 다양한 세부사업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 단위사업별로 특정 예산코드에 속하는 모든 지원 사업들을 세분류한 후, 각각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사업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하고 있음

- 개인·단체 구분부터 지원 단체의 홈페이지 주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음
 - 사업데이터 자료에서 장르별·역할별 사례비 수준 조사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항목이나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예를 들어, 분야 와 세부분야 와 같은 항목은 해당 사업의 장르별 분류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 장르별·역할별 사례비 수준 분석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항목은 사업관리번호임
- 사업관리번호는 개별 지원 사업에 주어진 일련번호로 한 해 동안 진행된 모든 예술지원사업에 독립적으로 부여됨
 - 뒤에 소개될 사례비 정산자료가 사업관리번호별로 집계되어 제공되기에 분석에서 중요하게 이용됨
- 이외에 예산코드명과 사업명, 분야(장르) 및 세부분야, 공연횟수, 발표작품수(발표작품수_창작신작) 등의 항목은 모두 사례비 수준 파악에 중요하게 이용되는 정보임
- 다만, 일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단체 및 대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타 불필요한 항목들은 분석에서 제외됨
- 사례비 정산데이터는 예산지원 사업의 사례비 지급 내역을 정산 건당으로 정리한 자료임
- 예산지원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에 지급된 사례비 정산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장르별·역할별 1인당 (1회공연) 사례비 수준을 조사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임
 - 장르별·역할별 1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에 직접 이용되는 항목들로 사업관리번호, 사용금액(지원금액을 의미), 지원 구분(지원금/자체자금 여부를 의미), 받는 사람, USEDPUR(지원금액의 사용목적의 의미), 적요(세부설명을 의미),

항목(지원금액 대분류를 의미) 등이 있음

3. 일인당 사례비 측정단위

- 정확한 사례비 수준의 조사와 비교를 위해서는 각 장르별·역할별로 유효한 일인당 사례비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일인당 사례비의 측정단위를 적절히 설정해야 함

- 장르별·역할별 사례비 수준 분석에서 ‘공연횟수’가 중요하게 이용되는 이유는 공연 예술의 특성상 공연기간이나 발표작품 수보다는 공연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사례비가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이기 때문임
 - 일반 산업 근로자들의 경우 인건비 수준이 시간당 임금이라는 개념에 따라 정해지는 것과 달리, 공연예술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1회 공연 당 사례비라는 기준에서 사례비가 책정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함
 - 공연행위자(Performer)는 공연작품 수나 행사 수, 공연 기간보다는 공연횟수에 따라 사례비가 결정되기에 공연횟수가 분석단위로 적합함
 - 이는 공연행위 자체를 근로 행위로 볼 때 사례비는 실제로 진행한 공연횟수에 따른 인건비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임
 - 다만, 연출 및 작가 등 작품 창작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직업군은 공연횟수보다는 창작 작품 수(발표작품수_창작신작)에 근거하여 사례비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 공연창작자는 작곡가, 안무가, 감독 등 작품 창작물에 따라 사례를 받는 직업군을 지칭

- 사례비 지급 관행 이외에도 사업데이터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행사기간, 공연기간, 발표작품 수 등은 사례비 측정단위로서 적절하지 않음

- 먼저, 행사기간이 사례비 측정단위로서 적절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사업데이터에서 다수의 사업에 대해 행사기간이 0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임
 - 실제로 2016년 사업데이터의 54개의 사업 중 43개의 사업의 행사기간이 0으로 기록되어 있음에 유의

- 공연기간이 사례비 측정 단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사업데이터 자료에서 ‘공연기간’ 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사업번호 201651465 “***무용제” 는 실제로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동안 진행된 사업이지만, 사업데이터 상 “***무용제” 의 공연 기간은 30일로 기록되어 있음
 - 실제로 축제가 10일간 진행되었고 사업데이터 상 공연 기간도 10일로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연기간은 사례비 측정을 위해 적절한 기준이 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음
 - 하나의 개별 사업자료는 한 개 사업의 정보만을 포함하지만, 해당 사업에는 한 개 또는 복수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즉, 공연 기간이 10일이라고 해서 해당 사업(***무용제)에 참여한 모든 예술 단체가 10일 내내 공연을 했을 것이라는 보장할 수 없음
 - 모든 단체가 하루씩 공연했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도 없음
 - 단체에 따라서는 2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공연을 진행했을 수도 있으나, 정산데이터 자료로 개별 단체의 공연 기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함

- 발표작품 수가 비교단위로서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사업데이터만으로 개별 예술 단체가 몇 개의 작품을 진행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

- “***무용제” 의 경우에도 66개의 작품이 공연되었음
- 66개의 예술 단체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예술 단체가 1개의 작품을 공연하였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표작품 수만큼의 공연단체들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사업데이터 상 참여단체 수나 단체별 공연한 작품 수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산데이터 세부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어떤 단체가 1개 이상의 작품을 공연한 후 사례비를 정산받았는지는 주어진 데이터로는 파악할 수 없음
 - 사업데이터와 정산데이터만으로는 “***무용제” 에 참여한 예술 단체 각각 몇 개의 작품씩을 공연했는지 알 수 없음
- 한편, 발표작품 수가 1개인 경우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데이터 상 발표작품 수가 2개 이상인 사업이 많음
 - 전체 54개 사업 중 22개 사업이 이에 해당
 - 발표작품 수가 0개인 사업도 7개나 됨

4. 자료의 가공과 활용

- 공연횟수가 일인당 사례비 수준을 측정하는 적절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사업데이터 자료에 기재된 공연횟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공연횟수는 0부터 206까지 다양한 값을 가짐
 - 공연횟수 값이 1인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단체들이 1회의 공연을 각각 진행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공연횟수가 206회인 경우, 각 단체가 206회씩 공연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공연횟수는 사업 기간 내 참여한 ‘모든 단체의 전체 공연횟수의 합’ 을 의미하는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함
- 1회 공연 단위로 측정되는 일인당 사례비 수준은 한 명의 공연예술인에게 지급된 전체 사례비를 해당 공연예술인이 ‘출연’ 한 공연횟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함
- 해당 공연예술인이 출연한 공연횟수와 관련된 정보는 ‘사업자료 상의 공연횟수’ 가 유일하기에, 양자가 의미하는 바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일인당 1회 공연 사례비 수준이 제대로 도출될 수 있을 것임
 - 사업자료 상의 공연횟수가 1개 단체의 참여만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연횟수를 해당 공연예술인의 공연횟수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공연횟수가 1회인 사업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한다면, 1인당 1회 공연 사례비를 오류 없이 계산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 분석의 취지 상 공연횟수가 1회인 사업들 자료는 일인당 사례비 수준을 조사하기 위한 최적의 자료라 할 수 있음
- 공연횟수가 1회인 사업들은 모두 공연기간도 1일로 기록되어 있어, 참여한 예술 단체가 하루 동안 1회씩 공연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임
 - 공연횟수가 1회인 사업이 1인당 사례비 수준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이들 자료만을 이용하는 경우 분석 대상 자료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통계분석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연횟수가 2회 이상인 사업들도 사례비 단가 조사에 이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음
-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복수의 공연횟수를 보이는 사업자료에서 해당 사업에 복수의

공연단체가 참가하는 경우, 정산자료에 나타나는 공연예술인이 실제로 출연한 공연횟수를 사업자료 상의 공연횟수로부터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임

- 개별사업에 복수의 단체가 참여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참여단체 수에 대한 정보가 사업자료로부터 적절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분석상의 어려움이 존재함
- 예를 들어, 사업번호 201650021 "**** 연극제"는 2016년 8월 31일부터 2016년 9월 11일까지 12일간 진행된 사업으로, 총 공연횟수는 133회로 나타나 있음
 - 여기에서 하나의 공연단체가 12일 동안 하루 평균 11회 공연을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임
 - 따라서 이 사업은 여러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이렇듯 복수의 단체(개인)가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후 살펴볼 정산데이터 상의 개인이 받은 사례비가 정확히 몇 회의 공연에 따른 사례비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예를 들어, 10회 공연이 진행된 사업은 이 사업에 참여한 단체 수가 10개라면, 각 단체가 1회씩 공연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으며, 만일, 이 사업에 참여한 단체 수가 1개라면, 1개의 단체가 10회 공연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
 - 결국, 참여단체 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 단체가 각각 몇 회의 공연을 수행했는지 알 수 없어, 의미 있는 사례비 수준의 추출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음

□ 다수의 공연횟수를 보이는 사업에서 1개의 단체만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일인당 사례비 분석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사업번호 201664095 "****사업"은 공연횟수가 16회인 연극-뮤지컬 장르의 사업으로 이고, 참여 단체는 "**** 매니지먼트" 1개뿐인 것으로 나타나 있음
- 공연횟수가 이처럼 매우 많은 경우, 역할 비중에 따라 더블 캐스팅을 진행하는 공연예술 특성상, 공연에 참여한 모든 배우가 16회의 공연을 진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정산데이터에는 배우 개인의 역할비중 및 공연횟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형태의 사업자료 역시 1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공연횟수가 매우 많은 사업의 경우, 1개 단체만이 참여하더라도 1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 작업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이외에도 공연횟수가 많은 사업 중에서 "축제", "페스티벌" 와 같이 사업의 성격상 참여단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 정산데이터를 살펴보면, 여러 단체에 사례비를 지급하는 축제 또는 페스티벌은 공연행위자 1인당 사례비 수준 파악이 어려움
- 사업을 진행하는 집행기관은 편의상 참여한 대표단체를 통해 단원 전체에 대한 사례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사업번호 201642795 "**** 국악제"의 경우 정산데이터에서 대표자 1인에게 지급된 1,160,400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공연예술인 개인에게 배분되었는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움

사업연도	사업관리번호	사용금액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USEDPUR	적요
2016	201642795	1,160,400	강**	(사)한국***	출연료	제 35회 ***국악제 출연료 강** 외 5명 상주아리랑

□ 예외적으로 과다하게 지급된 사례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도 정확한 역할을 알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 예를 들어, 무용-발레 장르의 사업번호 201662829의 정산데이터 중 2,019,940원이 지급된 인건비 항목은 주어진 데이터만으로는 어떤 역할에 대한 사례비인지 파악할 수가 없음

사업연도	사업관리번호	사용금액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USEDPUR	적요
2016	201662829	2,019,940	여*	(사)서울***	인건비-여*(10월/11월분)	인건비-여*(10월/11월분) 2개월분 합산금액

- 또한 공연 사례를 팀 단위로 지급한 경우에도 이후 이루어지는 1인당 사례비 정산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함
 - 음악-교성곡 장르 사업번호 201665431 정산데이터 중 오케스트라 사례비 5,000,000원은 오케스트라 단원 개개인의 1인당 사례비 수준을 알 수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

사업연도	사업관리번호	사용금액	받는 사람	보내는사람	USEDPUR	적요
2016	201665431	5,000,000	(사)전북****	사)대한민국**	지속지원금 연주	오케스트라 사례비 : 5,000,000

- 지불된 금액이 온전하게 역할에 대한 사례라고 보기 힘든 경우에도 1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일례로 아래의 전통예술 장르 사업번호 201647052 정산자료 중 지급된 900,000원은 음향기기 대여비용 포함한 금액에 대한 정산자료로 실제 음향기기 대여료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없는 이상, 무대 관리에 따른 사례비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

사업연도	사업관리번호	사용금액	받는 사람	보내는사람	USEDPUR	적요
2016	201647052	900,000	십년**	김**	음향대여 무대설치비 및	음향대여 및 무대설치비

- 일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위와 같은 자료들은 모두 일일이 data screening 작업을 통해 걸러낸 후 본격적인 통계분석 작업을 진행하였음
- 결론적으로 이하의 분석에서는 일인당 사례비 수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자료를 이용하였음
 - 단수의 공연횟수 사업
 - 복수의 공연횟수 사업
 - 복수의 공연을 하는 경우, 사례비 정산자료로부터 참여단체 수가 비교적

소수인 것으로 확인 가능하고 공연횟수도 너무 많지 않은 사업

- 기본자료(A): 공연횟수 1회인 사업 자료
 - 공연횟수가 1회인 사업들 자료로 일인당 사례비 수준을 가장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자료

- 확장자료(B): 공연횟수가 6회 이하로 상대적으로 적고, 참여단체 숫자 파악이 용이한 사업 자료
 - 공연횟수가 2회 이상이지만, 참여단체와 단체별 공연횟수 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사업 자료
 - 전체 공연횟수를 통해 공연예술인 일인당 출연횟수가 산술적으로 계산 가능하며, 1회당 공연 사례비 분석이 가능한 자료
 - 여기서는 1인당 1회 공연 사례비가 적절히 계산 가능하도록 편의상 공연횟수를 6회 이하로 한정하여 자료를 집계하였음

제3절 장르별·역할별 사례비 정산자료

1. 정산자료 상 장르 및 역할 분류

- 장르별·역할별 일인당 사례비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예산지원 사업의 정산데이터를 먼저 장르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사례비 정산데이터는 장르 구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에, 해당 정산 내역이 속하는 사업데이터 상의 장르 구분을 이용하여 장르별 분류를 진행하였음
 - 이를 위해 먼저 사업데이터 상 사업관리번호를 장르별로 구분하여 재배열한 후, 각 장르에 속하는 사업관리번호들과 매치되는 정산데이터들을 모으는 방식을 이용하였음
 - 사업데이터 상 분야 와 세부분야 '항목을 검토한 결과, 사후적으로 구분 가능한 장르는 총 9가지로 나타났음
 - 발레
 - 무용
 - 전통예술
 - 음악-오페라
 - 음악-관현악
 - 음악-교성곡
 - 연극-창작극
 - 연극-뮤지컬
 - 연극-연극공연

- 사례비가 지급된 공연예술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기에 앞서, 먼저 해당 정산 내용이 실제로 공연예술 활동에 대한 사례비에 해당되는지를 정산자료로부

터 판별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정산데이터 중 ‘항목’ 을 보면, 지원 금액의 기본적인 성격을 유추할 수 있음
- 여기에서는 ‘항목’ 부분이 '사례비', '용역비', '인건비', '일용임금', '기타직보수'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정산내용이 모두 공연예술인에 대한 사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 또한 정산데이터 중 지원 구분 사항을 보면 정산내용이 지원금 , 자체자금 , 이자 발생금액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자발생금액’ 에 해당하는 정산 내역은 사례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분석에서 이를 모두 제외하기로 함

□ 정산자료 중 ‘USEDPUR’ 와 ‘적요’ 항목은 각각 지원금의 사용목적과 세부내용을 나타내는데, 이를 이용하여 자료를 재정리하면, 공연예술인의 역할들에 대한 일차적인 분류가 어느 정도 가능해짐

- 이러한 방법을 통해 파악된 역할들 중에서 사례비 수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 있는 것만을 선별해냄으로써 최종적으로 구분 가능한 역할을 확정하였음
- 사전에 장르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연예술인의 역할을 구분하고 사례비 정산 자료를 그에 맞추어 집계·분류하는 방법을 활용하지 못했던 것은 각 단체가 제출한 정산자료에 나타나는 역할에 대한 명칭과 구분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사후적인 방식에 의해 개별적으로 확인해 나가야하기 때문임
- 역할별 사례비 수준을 보다 정확하고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산자료 제출 시 역할에 대한 통일된 명칭을 일괄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장르별 공연예술인의 역할에 대한 정산자료 상 분류 결과

- 아래의 표는 정산자료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통해 공연예술인의 사례비 수준

- 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역할을 장르별로 분류한 것임
- 무용 장르가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으로 세분화되고 실내악 분야가 추가된 총 11개 장르에 대해 정산자료로부터 분류 가능한 역할들을 정리한 것임

〈표4〉 공연예술인의 장르별 역할: 정산자료 상 구분

역할 장르	구분	비고
무용-한국무용	• 무용수, 연주자, 조안무, 작곡, 음악감독, 대본, 프로듀서, 소품·분장, 무대관리, 공연 기획·운영	
무용-현대무용	• 무용수, 연주자, 조안무, 작곡, 음악감독, 대본, 프로듀서, 소품·분장, 무대관리, 공연 기획·운영,	
무용-발레	• 무용수, 안무가, 연주자, 무대감독, 무대관리, 대본, 소품·의상, 음향, 작곡가	
연극-뮤지컬	• 각색·대본, 무대감독, 기술감독, 프로듀서, 의상감독, 음악감독, 연출, 안무감독, 편곡·작곡, 음악조감독, 조연출, 무대관리, 분장, 배우, 연주	
연극-연극공연	• 배우, 기획, 연출, 무대관리, 작곡, 소품·의상	
연극-창작극	• 배우, 작가, 연출, 조연출, 음악감독, 무술감독, 무대관리, 분장·의상, 기획	
음악-오페라	• 작가, 무대감독, 작곡, 지휘, 조명감독, 연출, 조연출, 안무가, 무대조감독, 분장, 무대관리, 기획·홍보, 연주, 무용수, 오페라가수	
음악-관현악	• 반주 * 활용 가능한 정산자료가 부족하여 반주자 외 역할에 대한 분석이 제한됨	
음악-교성곡	• 작곡, 지휘 * 활용 가능한 정산자료가 부족하여 작곡, 지휘 외 역할에 대한 분석이 제한됨	
음악-실내악	• 연주, 작곡, 지휘	
전통예술	• 배우, 연주, 무용수, 안무가, 작곡·편곡, 대본, 연출, 조연출, 무대감독, 음악감독, 조명감독, 의상감독, 소품, 무대관리, 기획·운영	

2. 장르별·역할별 사례비 정산자료 집계

□ 장르별 및 역할별로 정산자료를 재분류하여 집계한 결과가 아래의 표에 정리되어 있음

- 표를 보면, 음악-오페라 장르가 가장 많은 정산 건수(196건)를 보이고 있음
- 각 장르 내 역할별 정산 건수의 분포를 보면, 대체로 출연진과 무대기술진에 정산 건수가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역할별로 정산 건수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표에 따르면, 각 장르별로 일인당 사례비 수준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역할과 그렇지 못한 역할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음
 - 1인당 사례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산자료 수가 너무 적은 경우는 의미 있는 일인당 사례비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보아, 분석대상에 제외하기로 함
 - 즉, 활용 가능한 정산자료 수가, 예를 들어, 5건 미만으로 너무 적은 역할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표5〉 장르별·역할별 사례비 정산 건수

장르	정산 건수	역할	정산 건수	정산비중	적합성
무용-한국무용	109	무용수	30	0.275	적합
		연주자	8	0.073	적합
		무대관리	39	0.358	적합
		작곡	5	0.046	적합
		음악감독	2	0.018	부적합
		대본	4	0.037	부적합
		프로듀서	1	0.009	부적합
		소품·분장	4	0.358	부적합
		조안무	3	0.275	부적합
		기획·운영	3	0.028	부적합
		음향	1	0.009	부적합
		안무가	3	0.028	부적합
		무대감독	4	0.037	부적합
연출	1	0.009	부적합		
무용-현대무용	45	무용수	25	0.556	적합
		기획·운영	5	0.111	적합
		무대관리	8	0.178	적합
		음악감독	2	0.044	부적합
		의상	2	0.044	부적합
		무대감독	1	0.022	부적합
		안무	1	0.022	부적합
대본	1	0.022	부적합		
무용-발레	143	무용수	100	0.699	적합
		안무가	5	0.035	적합
		연주자	13	0.091	적합
		소품·의상	6	0.042	적합
		무대관리	4	0.028	부적합
		대본	2	0.014	부적합
		무대감독	4	0.028	부적합
		음향	2	0.014	부적합
		작곡가	2	0.014	부적합
		연출가	1	0.007	부적합
		음악감독	2	0.014	부적합
		의상감독	1	0.007	부적합
		기획·홍보	1	0.007	부적합

연극-뮤지컬	174	각색·대본	5	0.029	적합
		무대감독	5	0.029	적합
		연주	14	0.080	적합
		프로듀서	5	0.029	적합
		배우	91	0.523	적합
		음악감독	8	0.046	적합
		연출	5	0.029	적합
		무대관리	13	0.075	적합
		편곡·작곡	8	0.046	적합
		조연출	5	0.029	적합
		음악조감독	4	0.023	부적합
		안무	3	0.017	부적합
		분장	1	0.006	부적합
의상감독	4	0.023	부적합		
기술감독	1	0.006	부적합		
조안무	2	0.011	부적합		
연극-연극공연	36	배우	22	0.611	적합
		기획	2	0.056	부적합
		연출	3	0.083	부적합
		무대관리	4	0.111	부적합
		작곡	3	0.083	부적합
		소품·의상	2	0.056	부적합
연극-창작극	84	배우	59	0.702	적합
		무대관리	6	0.071	적합
		연출	3	0.036	부적합
		조연출	3	0.036	부적합
		음악감독	2	0.024	부적합
		무술감독	1	0.012	부적합
		작가	3	0.036	부적합
분장·의상	4	0.048	부적합		
기획	3	0.036	부적합		
음악-오페라	200	작가	7	0.035	적합
		무대감독	7	0.035	적합
		작곡	5	0.025	적합
		지휘	8	0.040	적합
		오페라가수	94	0.470	적합
		연출	6	0.030	적합
		조연출	7	0.035	적합
		무용수	6	0.030	적합
		연주	20	0.100	적합
		분장	8	0.040	적합
		무대관리	6	0.030	적합
		기획·홍보	15	0.075	적합
		무대조감독	1	0.005	부적합
		안무가	2	0.010	부적합
		조명감독	2	0.010	부적합
		음악코치	4	0.020	부적합
		음향감독	1	0.005	부적합
의상감독	1	0.005	부적합		
음악-관현악	103	연주	84	0.816	적합
		무대관리	10	0.097	적합
		작곡	5	0.049	적합
		지휘	3	0.029	부적합
		무대감독	1	0.010	부적합

음악-교성곡	2	작곡	1	0.5	부적합
		지휘	1	0.5	부적합
음악-실내악	30	연주	22	0.733	적합
		작곡	2	0.067	부적합
		지휘	3	0.100	부적합
		무대감독	1	0.033	부적합
		성악	1	0.033	부적합
		안무	1	0.033	부적합
전통예술	126	배우	56	0.444	적합
		연주	9	0.071	적합
		무용수	9	0.071	적합
		작곡·편곡	7	0.056	적합
		무대관리	17	0.135	적합
		기획·운영	5	0.040	적합
		연출	3	0.024	부적합
		조연출	2	0.016	부적합
		무대감독	3	0.024	부적합
		음악감독	4	0.032	부적합
		조명감독	1	0.008	부적합
		의상감독	4	0.032	부적합
		소품	1	0.008	부적합
		안무가	3	0.024	부적합
		대본	2	0.016	부적합
평론	1	평론	1	1.000	부적합
전체	1070				

주: 2015년, 2016년 정산자료 통합. 공연횟수가 6회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만 사례비 수준을 분류하였음.

제4절 장르별·역할별 사례비 수준: 통계 분석

1. 기본자료 분석

□ 분석 작업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

- 각 장르별·역할별 1인당 사례비 수준의 평균, 중간, 최소, 최댓값을 조사·비교
- 1인당 사례비 수준의 장르 및 역할별 격차 비교를 위해 사례비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범위)를 조사하고, 표준편차와 변동계수를 구한 후 상대적 차이 비교·분석
 - 절대적 차이(=표준편차) vs 상대적 차이(=변동계수)
 - 변동계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
- Histogram을 활용한 장르 및 역할에 따른 1인당 사례비 수준 분포비교

□ 기본자료(A) 분석

- 2015년도와 2016년도 정산자료 중 공연횟수가 1인 사업의 정산자료 분석
- 사례비 정산자료가 5개 미만인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

〈표6〉 일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 기본자료(A)

(단위: 원)

장르	역할(정산건수)	평균	중간값	최솟값	최댓값	범위	표준편차	변동계수
무용-한국무용	무용수(10)	489,655	241,655	193,400	1,450,500	1,257,100	430534	0.87
무용-현대무용	무용수(8)	785,688	773,600	193,400	1,450,500	1,257,100	530750	0.67
무용-발레	무용수(27)	462,011	290,100	290,100	967,000	676,900	226517	0.49
	연주자(6)	402,917	386,800	386,800	483,500	96,700	39477	0.09
연극-뮤지컬	편곡·작곡(7)	3,729,857	2,127,400	1,740,600	8,703,000	6,962,400	2646388	0.71
	무대관리(6)	847,629	241,750	57,374	3,868,000	3,810,626	1486378	1.75

	연주(8)	670,856	435,150	290,100	1,547,200	1,257,100	441955	0.65
	조연출(5)	1,257,100	967,000	290,100	2,417,500	2,127,400	1075309	0.49
	배우(67)	934,807	750,000	193,400	3,335,000	3,141,600	784764	0.83
	음악감독 (7)	1,906,371	1,740,600	870,300	2,901,000	2,030,700	842482	0.44
연극- 연극공연	배우(16)	605,000	676,900	483,500	678,900	195,400	97203	0.16
연극- 창작극	배우(48)	551,542	483,500	96,700	1,643,900	1,547,200	363262	0.65
	무대관리 (6)	238,367	250,000	100,000	290,100	190,100	70574	0.29
음악- 오페라	오페라 가수(5)	1,030,300	967,000	773,600	1,450,500	676,900	250917	0.24
음악- 관현악*	연주(84)	1,037,763	430,200	241,750	30,141,020	29,899,270	3288690	3.16
	작곡(5)	3,648,200	3,223,333	322,333	5,736,000	5,413,667	2243893	0.61
	기획· 운영(10)	298,510	100,000	60,000	790,150	730,150	334017	1.11
전통예술	배우(13)	295,431	300,000	290,100	300,000	9,900	5136.858	0.01
	연주(9)	292,300	290,100	290,100	300,000	9,900	4365.490	0.01
	무용수(5)	200,000	200,000	200,000	200,000	0	0	0

*기본자료와 확장자료 분석결과가 동일

**교성곡, 실내악 장르는 분석 가능한 정산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 주요 분석결과

- 각 장르별로 평균적으로 1-2개의 역할에 대해서만 일인당 사례비 수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여 장르별·역할별 사례비 수준의 파악이 어려움
 - 음악-교성곡, 실내악의 경우는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도 일인당 사례비 수준을 분석할 수 없었음
- 분석 가능한 자료들은 9개 장르 모두 대부분 공연자(Performer)에 집중되어 있음
 - 뮤지컬 장르가 그나마 분석 가능한 역할이 많았고, 이 장르 역시 배우, 연주자와 같은 공연 출연진들이 정산 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
- 공연지원 기술진의 사례비 수준은 연극-창작극, 연극-뮤지컬 장르의 무대관리 역할과, 음악-관현악 장르의 기획·운영 역할에 대해서만 분석이 가능하였음
- 9개 장르 중 뮤지컬, 오페라, 관현악 장르의 사례비 수준이 다른 장르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작곡, 음악 감독 등 창작진의 경우에는 대체로 다른 역할들에 비해 일인당 사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뮤지컬 장르의 편곡·작곡 역할의 일인당 사례비 평균은 3,729,857원으로 같은 장르 배우 역할의 일인당 사례비 평균의 약 4배 높은 수준임
 - 다만, 변동계수 및 사례비 수준 범위가 크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경력이나 지명도에 따라 사례비 수준 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기획·운영 역할과 무대관리 역할 모두 일인당 사례비 평균이 각각 298,510원과 238,367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
 - 이는 특히 같은 장르의 다른 역할과 비교하면 사례비 수준이 적게는 절반 수준에서 크게는 10% 수준임
 - 다만, 뮤지컬 무대관리의 경우 1인당 사례비 평균값이 높은 값을 보이지만, 사례비 범위가 3,810,626원으로 매우 크고, 변동계수 또한 1.754로 매우 높아 중간값인 241,750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통예술, 연극공연 장르의 역할별 사례비 변동계수 값이 크지 않아, 해당 장르에서 역할에 따른 일인당 사례비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그 외의 장르의 경우 대체로 변동계수 값이 크게 나타나, 같은 역할 내에서도 일인당 사례비 수준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뮤지컬 배우의 경우 사례비 수준의 최댓값과 최솟값 차이가 3,141,600원으로 매우 큼
 - 다만, 뮤지컬 등 장르에 따라 주·조연과 같은 역할 비중의 차이에 따른 사례비 차이가 존재함을 감안해야 함
 - 관현악 연주자의 경우에는 사례비 수준의 범위는 29,899,270원으로 모든 장르 및 역할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변동계수 역시 3.169로 매우 크며, 이는 동일 역할 내 사례비 수준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함
- 1회 공연횟수 사업들의 경우 사례비 정산자료 개수가 매우 적어 분석이 제한적이기에, 본격적인 사례비 분석을 위해서는 확장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함

2. 확장자료 분석

□ 확장자료(B) 분석

- 공연횟수가 6 이하인 사업의 정산자료
- 공연횟수가 2회 이상인 사업들은 정산자료 금액을 공연횟수로 나눔
- 마찬가지로 사례비 정산자료가 5개 미만인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

□ 분석의 확장성

- 기본자료(A)에서 자료수의 부족으로 분석이 어려웠던 다수의 역할이 자료의 확장을 통해 일인당 사례비 수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짐을 알 수 있음
 - 특히, 오페라 장르는 12개 역할에 대해 일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이 가능
-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해진 역할
 - 한국무용: 연주자, 무대관리, 작곡
 - 현대무용: 기획·운영, 무대관리
 - 발레: 안무가, 소품·의상
 - 뮤지컬: 각색·대본, 무대감독, 프로듀서, 연출
 - 오페라: 작가, 무대감독, 작곡, 지휘, 연출, 조연출, 무용수, 연주, 분장, 무대관리, 기획·홍보
 - 실내악: 연주
 - 전통예술: 무대관리, 작곡·편곡, 기획·운영
- 또한 자료의 확장으로 분석 가능한 데이터가 늘어나 기본자료(A)보다 좀 더 정확한 사례비 수준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음
- 예를 들어, 공연출연진을 포함하여 기술진이나 창작진의 일인당 사례비 수준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짐
 - 한국무용: 무용수
 - 현대무용: 무용수

- 발레: 무용수, 연주자
 - 뮤지컬: 편곡·작곡, 연주, 무대관리, 배우, 음악감독
 - 창작극: 배우
 - 오페라: 오페라 가수
 - 전통예술: 배우, 무용수
- 다만, 공연횟수 6회 이하의 사업까지 분석대상 자료를 확대하였음에도 여전히 1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이 제한적인 역할은 존재함
- 교성곡 장르는 1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이 여전히 불가능함

<표> 일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 확장자료(B)

(단위: 원)

장르	역할 (정산건수)	평균	중간값	최솟값	최댓값	범위	표준 편차	변동 계수
전체	1247건의 정산자료							
무용- 한국무용	무용수(30)	380,868	386,800	193,400	967,000	773,600	200297	0.52
	연주자(8)	746,063	846,125	200,000	1,208,750	1,008,750	502522	0.67
	무대관리 (39)	237,922	246,585	39,470	1,015,350	975,610	189645	0.79
	작곡(5)	3,565,708	3,868,000	229,140	6,769,000	6,539,860	2840407	0.79
무용- 현대무용	무용수(25)	785,204	967,000	145,050	1,450,500	1,305,450	549554	0.70
	기획·운영 (5)	952,302	736,854	676,900	1,934,000	1,257,100	549604	0.57
	무대관리 (8)	210,685	232,080	58,020	234,981	176,961	77841	0.36
무용- 발레	무용수 (100)	383,095	300,000	91,750	1,000,000	908,250	193851	0.50
	안무가(5)	1,450,500	1,450,500	967,000	1,934,000	967,000	341886	0.23
	연주자(13)	446,308	483,500	386,800	483,500	96,700	48965	0.11
	소품·의상 (6)	765,542	725,250	483,500	1,208,750	725,250	321324	0.42
연극- 뮤지컬	각색·대본 (5)	3,500,540	1,740,600	967,000	11,604,000	10,637,000	4546134	1.29
	무대감독 (5)	1,313,800	1,250,500	193,400	2,901,000	2,707,600	987673	0.75
	연주(14)	611,282	483,500	290,100	1,547,200	1,257,100	335304	0.54
	프로듀서 (5)	1,837,300	1,934,000	967,000	2,901,000	1,934,000	71746	0.39
	배우(91)	809,072	372,297	143,763	4,835,000	4,691,237	1034565	1.27
	음악감독 (8)	1,864,929	1,450,500	870,300	2,901,000	2,030,700	858970	0.46
	연출(5)	1,856,640	1,740,600	1,257,100	2,901,000	1,643,900	639244	0.34
	무대관리	649,080	419,033	57,374	3,868,000	3,810,626	980767	1.51

	(13)							
	편곡·작곡 (8)	3,505,375	2,030,700	1,740,600	8,703,000	6,962,400	2531013	0.72
	조연출(5)	1,257,100	967,000	290,100	2,417,500	2,127,400	1075309	0.49
연극· 연극공연	배우(16)	605,000	676,900	483,500	678,900	195,400	97203	0.16
연극· 창작극	배우(59)	547,051	483,500	200,000	1,643,900	1,443,900	325565	0.59
	무대관리 (6)	238,367	250,000	100,000	290,100	190,100	70574	0.29
음악· 오페라	작가(7)	2,137,157	1,740,600	483,500	5,000,000	4,516,500	1452321	0.68
	무대감독 (7)	1,826,367	1,562,750	1,063,700	3,626,250	2,562,550	935784	0.51
	작곡(5)	6,925,624	2,417,500	1,750,270	24,175,000	22,424,730	9673684	1.39
	지휘(9)	1,480,719	942,825	241,750	4,835,000	4,593,250	1527199	1.03
	오페라 가수(94)	536,174	242,500	37,500	2,417,500	2,380,000	595905	1.11
	연출(6)	6,016,352	2,659,250	386,800	19,340,000	18,953,200	7341562	1.22
	조연출(7)	1,394,629	1,450,500	386,800	2,800,000	2,413,200	893642	0.64
	무용수(6)	241,750	241,750	145,050	290,100	145,050	52964	0.21
	연주(20)	282,848	193,400	193,400	967,000	773,600	224203	0.79
	분장(8)	247,918	130,545	30,000	773,600	743,600	254410	1.02
	무대관리 (6)	467,383	483,500	145,050	725,250	580,200	185466	0.39
기획·홍보 (15)	944,437	967,000	386,800	1,450,500	1,063,700	210647	0.22	
음악· 관현악	연주(84)	1,037,763	430,200	241,750	30,141,020	29,899,270	3288690	3.16
	작곡(5)	3,648,200	3,223,333	322,333	5,736,000	5,413,667	2243893	0.61
	기획· 운영(10)	298,510	100,000	60,000	790,150	730,150	334017	1.11
음악· 실내악	연주(22)	208,784	178,895	77,360	464,160	386,800	112440	0.53
전통예술	배우(56)	336,777	300,000	166,667	666,667	500,000	78188	0.23
	연주(9)	292,300	290,100	290,100	300,000	9,900	4365	0.01
	무용수(9)	281,067	200,000	200,000	382,400	182,400	96133	0.34
	무대관리 (15)	252,430	163,333	32,333	517,060	484,827	193292	0.76
	작곡· 편곡(7)	2,500,000	1,500,000	286,800	2,868,000	2,581,200	957691	0.60
	기획· 운영(5)	1,617,330	1,595,550	290,100	3,000,000	2,709,900	1328247	0.82

□ 장르별로 볼 때, 뮤지컬, 오페라, 관현악의 경우 대다수의 역할에 대한 일인당 평균 사례비가 1백만원을 크게 상회하여, 평균 사례비 수준은 다른 장르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대무용과 연극공연 부문의 평균 사례비는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며, 연극 창작극, 한국무용, 발레, 전통예술은 중간 또는 그 이하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같은 음악 장르라 하더라도 실내악은 관현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있음
 - 이러한 전체적인 특징은 기본자료(A)의 경우와 일정 부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역할별로는 작곡, 음악 감독, 작가, 안무가 등 창작진의 평균 사례비가 대체로 가장 높고, 무대 관리와 같은 기술진의 사례비가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배우나 무용수와 같은 역할의 사례비는 중간 수준에 위치
 - 예를 들어, 뮤지컬 장르의 각색·대본이나 편곡·작곡의 일인당 사례비 평균(350만원)은 동일 장르의 배우(80만9천원)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에 있음. 무대관리의 평균 사례비는 배우보다 낮은 수준인 64만9천원이었으며, 뮤지컬 연주는 이보다 낮은 61만1천원의 사례비를 지급받고 있음
- 유사한 역할이라도 어느 장르에 속하는지에 따라 사례비 수준은 큰 차이를 보임
- 출연진 역할의 경우, 뮤지컬 배우의 평균 사례비는 80만9천원, 현대 무용수는 78만5천원으로 높은 편이며, 연극 배우(54만7천원~60만5천원)와 오페라 가수(53만6천원)는 중간 수준에 있고, 한국 무용수(38만1천원)와 발레 무용수(38만3천원), 그리고 전통예술 배우(33만6천원)는 낮은 수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주자의 경우도 장르별로 차이를 보여, 관현악 연주(103만7천원)의 평균 사례비 수준이 월등히 높고, 한국무용 연주(74만6천원)와 뮤지컬 연주(61만1천원)는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데 비해, 발레 연주(44만6천원)는 중간 수준에 있으며, 전통예술 연주(29만2천원)와 오페라 연주(28만2천원), 실내악 연주(20만1천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다만, 무대관리 역할의 경우 장르별 격차는 다른 역할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뮤지컬 무대관리의 사례비 평균이 64만9천원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전통예술(25만2천원) 한국무용(23만7천원), 연극 창작극(23만8천원), 현대 무용(21만1천원) 등의 무대관리 사례비 평균은 모두 20만원 초중반에 위치하여 서로 유사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동일 장르 내 동일 역할에 있어서도 공연예술인에 대한 사례비 수준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장르의 특정 역할에 대한 사례비들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인 변동계수는 이러한 사례비의 상대적 격차를 잘 보여주는 지표임
 - 변동계수가 1이상으로 나타나 사례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는 주요 장르는 뮤지컬과 오페라, 그리고 관현악 부문임
 - 이 중에서도 관현악 연주 그룹 사례비의 변동계수가 3.16으로 가장 커, 이 역할에 지급되는 사례비 격차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뮤지컬 배우와 오페라 가수 그룹 사례비의 변동계수도 각각 1.27과 1.11로 나타나, 이들 역할에 종사하는 공연예술인들의 사례비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줌
 - 참고로, 사례비의 절대적 격차 측면에서도 관현악 연주자의 경우 최소와 최대 사례비 차이(범위 값)는 2990만원으로 뮤지컬 배우(469만원)와 오페라 가수(238만원)보다 월등히 큰 수준에 있으며, 동일한 현상은 표준편차로 측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남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관현악 연주자나 뮤지컬 배우, 오페라 가수 등은 지명도나 인기 또는 예술적 숙련도에 따라 사례비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직능 분야로, 위 통계 결과는 이러한 특성이 실제 사례비 정산자료를 통해서도 잘 확인되고 있음을 의미함
 -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세 가지 역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균 사례비 수준도 높은 편이어서, 역할 간 및 역할 내 불평등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직능 분야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음
- 위 세 가지 역할을 제외한 나머지 역할 내에서도 사례비 수준은 일정한 격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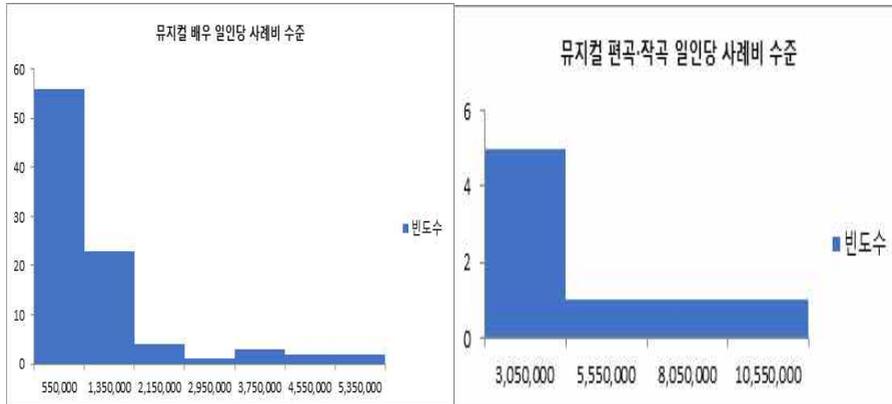
보이고 있는데, 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역할을 논외로 한다면, 대체로 그 격차는 크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뮤지컬 장르의 각색·대본이나 무대관리, 오페라 장르의 작곡과 지휘, 분장, 그리고 관현악 분야 기획·운영 등은 여전히 변동계수가 1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역할의 표본자료 수는 대부분 10개 이하로 매우 작아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일정한 표본수를 확보한 그룹에 해당하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를 포함한 무용 장르를 살펴보면, 무용수들의 사례비 변동계수는 대체로 0.50~0.70 수준에 있어 비교적 격차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연극공연과 연극 창작극, 그리고 전통예술 분야의 배우나 무용수들은 이보다 더 낮은 변동계수(0.16~0.59)를 보이고 있어, 동일 역할에 대한 사례비 격차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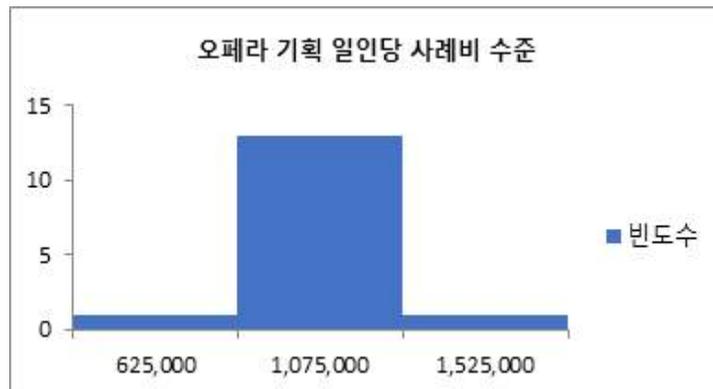
□ 아래의 히스토그램은 뮤지컬 장르의 배우와 편곡·작곡에 대한 일인당 사례비 수준의 개략적인 분포를 보여줌

- 두 역할에 대한 사례비는 오른쪽으로 크게 치우친(right-skewed) 형태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앞의 표에서 뮤지컬 장르의 배우와 편곡·작곡의 사례비 평균값이 중간값보다 크게 나타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 뮤지컬 장르의 경우 소수의 지명도 높은 인기 배우와 작곡자에게 예외적으로 높게 책정된 사례비가 지급되는 시장의 특성이 있음
- 소수 공연예술인들에게 고액의 사례비가 집중되는 현상은 뮤지컬 배우나 작곡가에게 지급되는 사례비 평균의 절대적 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값과의 격차도 동시에 확대시켜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 뮤지컬 장르의 두 역할에 대한 사례비의 변동계수가 각각 1.279과 0.722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은 이들의 사례비 수준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수치적으로도 확인시켜주는 결과임

<그림 7> 일인당 사례비 수준 Histogram: 확장자료B



- 뮤지컬 배우나 작곡가와는 달리 오페라 장르의 기획·운영 역할에 대한 사례비 수준은 정규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고 있음(아래의 히스토그램)
 - 이는 이 역할에 대한 사례비 수준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함을 의미함
 - 실제로 이 역할의 사례비 변동계수를 살펴보면 0.223으로 다른 장르 및 역할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음



참고: 연도별 분석자료

<표8> 2015~2016년 1인당 사례비 수준 비교

장르	역할	연도	평균	중간값	변동계수
무용-한국무용	무용수	2015	567,750	483,500	0.500
		2016	266,767	193,400	0.620
	무대관리	2015	254,407	186,147	0.997
		2016	223,792	246,585	0.513
무용-발레	무용수	2015	442,638	350,000	0.456
		2016	258,186	241,750	0.146
연극-뮤지컬	배우	2015	487,378	338,450	0.583
		2016	1,707,135	967,000	0.983
연극-창작극	배우	2015	768,228	531,850	0.632
		2016	449,949	400,000	0.328
음악-오페라	오페라가수	2015	379,522	193,400	1.436
		2016	1,115,788	980,200	0.345
음악-관현악	연주	2015	519,494	215,100	3.291
		2016	1,024,286	478,000	1.210

<2016년 기본자료(A)>

- 앞서 진행한 방식과 동일하게 두 가지 종류의 자료(기본자료A, 확장자료B)에 대한 분석을 2016년도 자료와 2015년도 자료 순으로 각각 진행
- 2016년 기본자료(A) 분석
 - 공연횟수가 1인 사업의 정산자료
 - 사례비 정산자료가 5개 미만인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

<표9> 2016년도 일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 기본자료(A)

(단위: 원)

장르	역할 (정산진수)	평균	중간값	최솟값	최댓값	범위	표준편차	변동계수
전체		145건의 정산자료						
무용- 한국무용	무용수(10)	761,735	773,600	400,000	967,000	567,600	223208	0.29
	연주자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조안무							
	작곡							
	음악감독							
	대본							
	프로듀서							
	소품·분장							
	무대관리							
기획·운영								
무용- 발레	무용수(15)	290,100	290,100	290,100	290,100	0	0	0
	연주자(6)	402,917	386,800	386,800	483,500	96,700	39477	0.09
	안무가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무대감독							
	무대관리							
	대본							
	소품·의상							
	음향							
	작곡가							
연극- 뮤지컬	배우(24)	1,707,135	967,000	193,400	4,835,000	4,641,600	1677289	0.98
	무대감독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기술감독							
	프로듀서							
	의상감독							
	음악감독							
	연출							
	안무감독							
	편곡·작곡							
	음악							
	조감독							
	조연출							
	무대관리							
	분장							
	각색·대본							
연주								
연극- 연극공연	배우(16)	605,000	676,900	483,500	678,900	195,400	97203	0.16
	기획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연출							
	무대관리							
	작곡							
소품·의상								
연극- 창작극	무대관리(6)	238,367	250,000	100,000	290,100	190,100	70574	0.29
	배우(29)	436,066	400,000	200,000	676,900	476,900	157256	0.36
	연출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조연출							
	음악감독							
무술감독								

	작가							
	분장·의상							
	기획							
음악- 오페라	오페라 가수(5)	1,030,300	967,000	773,600	1,450,500	676,900	250917	0.24
	무대감독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작곡							
	지휘							
	조명감독							
	연출							
	조연출							
	안무가							
	무대 조감독							
	분장							
	무대관리							
	기획·홍보							
	연주							
무용수								
작가								
음악- 관현악	반주(7)	1,024,286	478,000	478,000	3,824,000	3,346,000	1239688	1.21
음악- 교성곡	작곡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지휘							
전통예술	배우(13)	295,431	300,000	290,100	300,000	9,900	5136	0.01
	연주(9)	292,300	290,100	290,100	300,000	9,900	4365	0.01
	무용수(5)	200,000	200,000	200,000	200,000	0	0	0
	안무가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작곡·편곡							
	대본							
	연출							
	조연출							
	무대감독							
	음악감독							
	조명감독							
	의상감독							
	소품							
	무대관리							
기획·운영								

<2016년 확장자료(B)>

□ 확장자료B 분석

- 공연횟수가 6 이하인 사업의 정산자료
- 공연횟수가 2회 이상인 사업들은 정산자료 금액을 공연횟수로 나눔
- 마찬가지로 사례비 정산자료가 5개 미만인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

<표10> 2016년도 일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 확장자료(B)

(단위: 원)

장르	역할	평균	중간값	최솟값	최댓값	범위	표준편차	변동 계수	
전체	317건의 정산자료								
무용- 한국무용	무용수(22)	332,558	302,188	193,400	800,000	606,600	159819	0.48	
	무대관리(21)	223,792	246,585	62,855	483,500	420,645	114915	0.51	
	조안무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작곡								
	음악감독								
	대본								
	프로듀서								
	소품·분장 연주자								
기획·운영									
무용- 발레	무용수(36)	258,186	241,750	91,750	290,100	198,350	37616	0.14	
	연주자(13)	446,308	483,500	386,800	483,500	96,700	48965	0.11	
	안무가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무대감독								
	무대관리								
	대본								
	소품·의상								
	음향 작곡가								
연극- 뮤지컬*	배우(24)	1,707,135	967,000	193,400	4,835,000	4,641,600	1677289	0.98	
	편곡·작곡**(5)	4,448,200	3,868,000	1,934,000	8,703,000	6,769,000	2838586	0.64	
	음악감독(5)	2,443,900	2,417,500	1,450,500	4,000,000	2,549,500	1072937	0.43	
	프로듀서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의상감독								
기술감독									

	연출							
	안무감독							
	무대감독							
	음악							
	조감독							
	조연출							
	무대관리							
	분장							
	각색 · 대본							
연주								
연극-연극공연	배우(16)	605,000	676,900	483,500	678,900	195,400	97203	0.16
	기획							
	연출							
	무대관리							
	작곡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소품 · 의상							
연극-창작극	무대관리(6)	238,367	250,000	100,000	290,100	190,100	70574	0.29
	배우(41)	449,949	400,000	200,000	676,900	476,900	147432	0.32
	연출							
	조연출							
	음악감독							
	무술감독							
	작가							
	분장 · 의상							
	기획							
음악-오페라	오페라가수(20)	1,115,788	980,200	483,500	2,417,500	1,934,000	384551	0.34
	무대감독							
	작곡							
	지휘							
	조명감독							
	연출							
	조연출							
	안무가							
	무대조감독							
	분장							
	무대관리							
	기획 · 홍보							
	연주							
	무용수							
작가								
음악-관현악	반주(7)	1,024,286	478,000	478,000	3,824,000	3,346,000	1239688	1.21
음악-교성곡	작곡							
	지휘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전통예술	배우(56)	336,777	300,000	166,667	666,667	500,000	78188	0.23
	연주(9)	292,300	290,100	290,100	300,000	9,900	4365	0.01
	무용수(9)	281,067	200,000	200,000	382,400	182,400	96133	0.34
	무대관리(15)	252,430	163,333	32,333	517,060	484,827	193292	0.76
	작곡 · 편곡(7)	2,500,000	1,500,000	286,800	2,868,000	2,581,200	957691	0.60
	기획 · 운영(5)	1,617,330	1,595,550	290,100	3,000,000	2,709,900	1328247	0.82

	연출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조연출	
	무대감독	
	음악감독	
	조명감독	
	의상감독	
	소품	
	무대관리	
대본		

*분석 a와 동일; 공연횟수가 2~6회 진행된 사업이 없음; 연극공연, 창작극-무대관리, 관현악, 교성곡, 전통예술-연주자 역시 분석 a와 같음

** 창작 신작 수 기준. 작곡가는 공연한 횟수가 아닌 만든 작품에 따라 사례를 지급받기 때문임

<2015년 기본자료(A)>

<표11> 2015년도 1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 기본자료(A)¹⁾

(단위: 원)

장르	역할	평균	중간값	최솟값	최댓값	범위값	표준편차	변동계수
전체	84건의 정산자료							
무용-현대무용	무용수(8)	785,688	773,600	193,400	1,450,500	1,257,100	530750	0.67
	무대관리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조안무							
	작곡							
	음악감독							
	대본							
	프로듀서							
	소품·분장							
연주자								
무용-한국무용	무용수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무대관리							
	조안무							
	작곡							
	음악감독							
	대본							
	프로듀서							
	소품·분장							
무용-발레	무용수(12)	676,900	580,200	580,200	967,000	386,800	174936	0.25
	연주자							

1) 사업데이터 상 장르 분류가 16년도와 달라 장르 및 역할 분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안무가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무대감독							
	무대관리							
	대본							
	소품·의상							
	음향							
	작곡가							
연극-무 지컬	배우(35)	618,880	580,200	290,100	1,450,500	1,160,400	332671	0.53
	연주(6)	459,325	386,800	290,100	821,950	531,850	187881	0.40
	무대관리(5)	243,555	193,400	57,374	483,500	426,126	157666	0.64
	프로듀서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의상감독							
	음악감독							
	연출							
	안무감독							
	편곡·작곡							
	음악							
	조감독							
	조연출							
	무대감독							
	분장							
각색·대본								
기술감독								
연극-창 작극	배우(18)	768,228	531,850	290,100	1,643,900	1,353,800	485738	0.63
	무대관리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연출							
	조연출							
	음악감독							
	무술감독							
	작가							
분장·의상								
기획								
음악-오 페라	오페라기수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무대감독							
	작곡							
	지휘							
	조명감독							
	연출							
	조연출							
	안무가							
	무대조감독							
	분장							
	무대관리							
	기획·홍보							
	연주							
무용수								
작가								
음악-관 현악	반주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음악-실 내악	연주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작곡							
	지휘							

<2015년 확장자료(B)>

<표12> 2015년도 1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 확장자료(B)

(단위: 원)

장르	역할	평균	중간값	최솟값	최댓값	범위값	표준편차	변동 계수
전체	477건의 정산자료							
무용- 현대무용	무용수(25)	785,204	967,000	145,050	1,450,500	1,305,450	549554	0.70
	기획·운영(5)	952,302	736,854	676,900	1,934,000	1,257,100	549604	0.57
	무대관리(8)	210,685	232,080	58,020	234,981	176,961	77841	0.36
	작곡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음악감독							
	대본							
	프로듀서							
	소품·분장							
연주자								
조안무								
무용- 한국무용	무용수(8)	513,719	435,150	290,100	967,000	676,900	249148	0.48
	무대관리(18)	254,407	186,147	39,740	1,015,350	975,610	253619	0.99
	연주자(5)	1,063,700	1,208,750	483,500	1,208,750	725,250	324341	0.30
	작곡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음악감독							
	대본							
	프로듀서							
	소품·분장							
조안무								
기획·운영								
무용- 발레	무용수(65)	450,354	350,000	241,750	1,000,000	758,250	210357	0.46
	연주자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안무가							
	무대감독							
	무대관리							
	대본							
	소품·의상							
	음향							
작곡가								
연극- 뮤지컬	배우(67)	487,378	338,450	143,763	1,450,500	1,306,737	284268	0.58
	연주자(6)	459,325	386,800	290,100	821,950	531,850	187881	0.40
	무대관리(11)	371,504	419,033	57,374	644,667	587,293	175063	0.47
	프로듀서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의상감독							
	음악감독							
연출								
안무감독								

2) 사업데이터 상 장르 분류가 16년도와 달라 장르 및 역할 분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편곡·작곡							
	음악조감독							
	조연출							
	무대감독							
	분장							
	각색·대본							
	기술감독							
연극- 창작극	배우(18)	768,228	531,850	290,100	1,643,900	1,353,800	485738	0.63
	무대관리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연출							
	조연출							
	음악감독							
	무술감독							
	작가							
	분장·의상 기획							
음악- 오페라	오페라가수(74)	379,522	193,400	37,500	2,417,500	2,380,000	544963	1.43
	연주(17)	193,400	193,400	193,400	193,400	0	0	0
	지휘(5)	1,508,520	725,250	241,750	4,835,000	4,593,250	1921692	1.27
	연출(5)	5,285,622	1,450,500	386,800	19,340,000	18,953,200	7960429	1.50
	조연출(5)	1,178,880	773,600	386,800	2,800,000	2,413,200	997121	0.84
	분장(7)	172,820	116,040	30,000	483,500	453,500	151247	0.87
	기획·홍보(14)	908,289	967,000	386,800	967,000	580,200	163334	0.18
	안무가	유의미한 1인당 사례비 수준 값을 추출하기 어려움						
	무대							
	조감독							
	작곡							
	무대관리							
	조명감독							
	무대감독							
무용수								
작가								
음악- 관현악	연주(77)	519,494	215,100	120,875	15,070,510	14,949,635	1709553	3.29
	작곡(5)	3,648,200	3,223,333	322,333	5,736,000	5,413,667	2243893	0.61
	기획·운영(10)	298,510	100,000	60,000	790,150	730,150	334017	1.11
음악- 실내악	연주(22)	208,784	178,895	77,360	464,160	386,800	112440	0.53

3) 분석 a와 동일; 창작극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

제4장

국내외 사례 비교와 평가

제1절 : 국내사례 비교 노임 단가

1. 분석개요
2. 무대예술전문인 노임 단가
3. SW 노임 단가
4. 학술용역연구비 단가

제2절 : 국제비교 - 영국의 공연예술 인력 인건비 기준

제3절 :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2. 설문내용 및 조사결과

제4절 : 심층면접 조사

1. 조사 개요
2. 사례비 지급 실태
3. 사례비 책정 방식
4. 사례비 자원제도 운영방식
5. 심층면접 조사결과 비교



제1절 국내사례 비교: 노임 단가

1. 분석개요

- 본 절에서는 앞에서 조사한 공연예술인 사례비 수준을 국내의 다른 분야 노임 단가와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사례비의 상대적 수준을 평가하고자 함
 - 여기에서의 주된 비교 대상은 기준 노임 체계가 제도적 측면에서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분야로 한정함
 - 무대예술전문인 노임 단가와 공연예술과 관련이 없는 여타 분야에서 이용되는 인건비 기준을 조사하여 비교함
 - 보다 구체적으로, 무대예술전문인 노임단가, 소프트웨어 표준노임단가, 학술용역단가 등과 공연예술인 사례비 수준을 비교·평가함

2. 무대예술전문인 노임 단가

무대예술전문인노임단가

1. 개요(공연법 제 14조)

제 14 조(무대예술전문인)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에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그 실무경력이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에 상당하다고 인정 받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에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무대에술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 급 내지 3 급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자격요건, 자격검정 기타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적용기준

- 1 일 8 시간
- 평일기준
- 주 44 시간
- 4 대보험포함

<2005-2018 년 무대에술전문인 노임단가(KPI)>

□ 2005년 기준: 2010년 하반기까지 불변

번호	직종명	단가	단위	기준	해설
1	무대1급	180,039	일	2005년 01월	해당자격 - 무대1급, 무대기계1급, 무대음향1급, 무대조명1급
2	무대2급	124,534	일	2005년 01월	해당자격 - 무대2급, 무대기계2급, 무대음향2급, 무대조명2급
3	무대3급	73,198	일	2005년 01월	해당자격 - 무대3급, 무대기계3급, 무대음향3급, 무대조명3급

□ 2011년 1차 인상: 이후 2014년 하반기까지 불변

번호	직종명	단가	단위	기준	해설
1	무대1급	203,280	일	2011년 01월	해당자격 - 무대1급, 무대기계1급, 무대음향1급, 무대조명1급
2	무대2급	156,130	일	2011년 01월	해당자격 - 무대2급, 무대기계2급, 무대음향2급, 무대조명2급
3	무대3급	105,450	일	2011년 01월	해당자격 - 무대3급, 무대기계3급, 무대음향3급, 무대조명3급

□ 2015년 2차 인상 후 현재까지 불변(확인 필요)

호	직종명	단가	단위	기준	해설
1	무대1급	234,310	일	2015년 01월	해당자격 - 무대1급, 무대기계1급, 무대음향1급, 무대조명1급
2	무대2급	185,720	일	2015년 01월	해당자격 - 무대2급, 무대기계2급, 무대음향2급, 무대조명2급
3	무대3급	134,730	일	2015년 01월	해당자격 - 무대3급, 무대기계3급, 무대음향3급, 무대조명3급

출처:

<https://www.kpi.or.kr/www/price/wage_list.asp?WAGE_YEAR=2018&WAGE_MONTH=09&x=14&y=13&CATE_CD=701811&ITEM_CD=

- 위 표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무대예술전문인의 노임단가를 숙련도 및 실무 경력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한 자료임
 - 여기서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평일 기준 임금을 의미
 -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무대예술전문인 노임단가는 총 2차례 인상된 바 있음
 - 2011년도 1차 인상에서 무대 1급의 경우 약 2만 원 정도 인상
 - 나머지 2, 3급의 경우에도 약 3만 원 정도의 임금인상을 확인할 수 있음
 - 2015년도 2차 인상에서 역시 1, 2, 3급 모두 약 3만 원 정도 임금이 오름
 - 즉, 2005년부터 13년간 총 2번에 걸쳐 6만 원 정도의 무대예술전문인 노임 단가가 인상되었음
 - 실무경력별 무대 1, 2, 3급 간 노임단가는 대체로 5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임
 - 2015년도 최종 인상안 기준, 무대 1급은 23만4천원의 수준의 사례비를 지급 받고 있으며, 무대 2급의 경우에는 18만5천원, 무대 3급은 13만4천원의 사례비를 지급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비 단가 조사 결과와의 비교: 유의사항
 - 위의 무대전문예술인 노임단가는 1일 기준 사례비 수준이며, 앞에서 도출한 사례비 단가 조사 결과는 공연횟수 1회 기준임을 유의
 - 1일 1회 공연을 가정한 후, 사례비 단가조사와 무대전문예술인 노임단가를 비교
 - 무대전문예술인의 범주는 앞서의 사례비 단가조사 역할 분류상 무대관리에 포함
 - 무대관리에에는 조명, 무대설치, 무대 음향이 포함
 - 다만, 무대감독은 실질적으로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을 조절하는 전문예술 인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무대관리 및 계획을 수립하는 직종으로 보고, 무대전문예술인의 범주에서 제외
 - 또한, 장르별로 일인당 사례비 수준의 평균이 달라, 전체 장르의 관점에서 비교

를 진행

- 한편, 일인당 사례비 분석결과와 연계로 무대관리 역할 내 숙련도에 따른 임금 변화 및 차이에 대해서는 비교 불가능
 - 즉, 일인당 사례비 분석결과에서는 무대 1, 2, 3급 등 숙련도 별 임금차이를 분석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

□ 사례비 단가와 비교결과

- 한국무용의 경우 무대관리 역할의 일인당 사례비의 평균 및 중간값은 각각 23만8천원과 24만6천원으로 2015년 기준 무대 1급 23만4천원과 큰 차이가 없음
- 현대무용의 경우에도 무대관리 사례비 평균 및 중간값이 21만1천원과 23만2천원으로 무대전문예술인 노임단가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창작극 및 전통예술 장르도 무대관리 일인당 사례비 수준이 크게 노임단가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다만, 전통예술의 무대관리 일인당 사례비 수준 중간값은 16만3천원으로 무대전문예술인 노임단가의 무대 2급과 3급 사이 수준을 보임
- 한편, 뮤지컬의 경우에는, 일인당 사례비 수준의 평균값이 64만9천원, 중간값은 41만9천원으로 무대전문예술인 노임단가 기준에 비해 더 높은 값을 보임
 - 오페라 장르 역시 노임단가 기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3. SW 노임 단가

□ 소프트웨어사업

- 2018년 적용 SW 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18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통계승

인 제37501 호)의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

2018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
<p>적용기준일 : 2016년 9월 1일부터-현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회가 발표</p> <p>평균임금 SW사업대가 활용시 유의사항 ※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님 ※ 등급별 평균임금은 2019년에는 공표하지 않고, IT직무별 평균임금을 공표할 예정임</p> <p>*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 를 지칭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월평균임금은 일평균*근무일수(20.8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의 응답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여부와는 무관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2017년 대비 4.6% 증가함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에서 활용되는 자료입력원 평균임금 내 기본급은 2018년 93,287원임 시행일: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적용</p>

□ SW 기술자 평균임금-등급별

번호	직종명	단가	단위	기준	해설
1	기술사	462,072	일	2018년 09월	기술자격기준 : 기술사
2	특급기술자	406,342	일	2018년 09월	기술자격기준: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

					람
3	고급기술자	305,433	일	2018년 09월	기술자격기준 : ·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4	중급기술자	239,748	일	2018년 09월	기술자격기준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5	초급기술자	215,681	일	2018년 09월	기술자격기준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학력·경력자 :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6	고급기능사	194,340	일	2018년 09월	기술자격기준 :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7	중급기능사	158,597	일	2018년 09월	기술자격기준 :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8	초급기능사	120,948	일	2018년 09월	기술자격기준 :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9	자료입력원	117,145	일	2018년 09월	기술자격기준 :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음

출처:

<http://www.kpi.or.kr/www/price/wage_list.asp?WAGE_YEAR=2018&WAGE_MONTH=09&x=11&y=9&CATE_CD=701611&ITEM_CD=>>

- 위 표는 2018년 기준 SW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역할 및 숙련도별 9가지로 나누어 제시한 자료임
 - 위의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기준 임금을 의미
 - 크게 기술자, 기능사, 자료입력원 세 가지 역할로 구분
 - 기술자는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로 숙련도별로 임금체계가 구성
 - 기능사 역시 고급, 중급, 초급의 3단계 숙련도별 임금체계가 존재
 - 실무경력별 노임단가는 기술분야에서 특히 큰 차이를 보임
 - 기술사와 초급기술자의 1일 노임단가는 각각 46만2천원과 21만5천원으로 기술사의 1일 노임단가는 초급기술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기능사의 노임단가가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비해 낮음
 - 고급기능사의 1일 노임단가는 초급기술자의 1일 노임단가보다 낮음

- 사례비 단가 조사 결과와의 비교: 유의사항
 - 위의 SW 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기준 사례비 수준이며, 앞에서 도출한 사례비 단가 조사결과는 공연횟수 1회 기준임을 유의
 - 1일 1회 공연을 가정한 후, 사례비 단가조사와 SW 기술자 노임단가를 비교
 - SW 기술자 중 숙련도별 임금 격차가 뚜렷한 기술사 및 기술자를 비교대상으로 선택
 - SW 기술자 중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기술사는 창작진, 지휘자 등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역할과 직접 비교
 - 다만, 공연 창작진은 사례비 수준을 1 작품을 기준으로 분석함
 - 작품창작 시 걸리는 소요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해당 역할에 대해서는 1일 단가수준을 추정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비교 대상에서 제외
 - 따라서 창작진 또는 그와 유사한 역할의 출연진 중 1회 공연에 따라 사례비 수준을 분석한 지휘자를 비교 대상으로 선택
 -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초급기술자는 지휘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무대관리 역할과 직접 비교

□ 사례비 단가와 비교결과

- 지휘자의 일인당 사례비의 평균과 중간값은 각각 148만1천원과 94만2천원으로 기술사의 일인당 사례비 수준(46만2천원)보다 높은 값을 보임
 -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공연자의 경우에는 SW 기술사보다 일인당 사례비 수준이 높음
 -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지휘자 일인당 사례비의 최솟값은 24만2천원이고 변동계수가 1.03으로 매우 높아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
- 초급기술자의 노임단가는 21만5천원으로 한국무용, 현대무용, 창작극, 전통예술등 대다수 장르의 무대관리 역할 사례비의 평균 및 중간값과 유사함
 - 그러나 초급기술자의 노임단가는 오페라 장르의 무대관리 역할의 사례비의 평균 46만7천원이나 중간값 48만3천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오페라 장르보다 높은 수준의 사례비 값을 보이는 뮤지컬 장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4. 학술용역연구비 단가

□ 학술용역연구비

2016년 학술연구용역비 적용기준
제26조(인건비)
②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노임적용일 : 2016년 1월 1일 부터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 개월을 22 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단가는 2016 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26 조 제 2 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2 년 2.2%)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해 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 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한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2018년 학술연구용역연구비 단가

번호	직종명	단가	단위	기준	해설
1	책임연구원	3,169,323	월	2018년 01월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연구원	2,430,194	월	2018년 01월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연구보조원	1,624,503	월	2018년 01월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한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4	보조원	1,218,419	월	2018년 01월	타자/계산/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출처: <http://www.kpi.or.kr/www/price/wage_list.asp?CATE_CD=701411>

□ 위 표는 2018년 기준 학술연구용역연구비 단가를 숙련도별 4단계로 나누어 제시한 자료임

- 위의 노임단가는 1개월 기준 임금을 의미
- 숙련도 별로 책임연구원의 연구용역 단가는 361만9천원으로 가장 높음
 - 연구원의 연구 용역 단가가 243만1천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의 연구 용역 단가는 각각 162만4천원과 121만8천원으로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사례비 단가 조사 결과와의 비교: 유의사항

- 학술연구용역은 작업성격 상 공연예술분야의 작품창작진과 유사
 - 따라서 작품창작진과 비교
 -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창작진 중 숙련도 차이에 따라 사례비 수준 분석이 가능한 연출, 조연출에 대해서만 사례비 수준을 비교
- 학술연구용역 단가는 1개월 기준 사례비 수준이며, 사례비 단가 조사결과는 창작작품 수 기준임을 유의
 - 작품창작에 1개월의 작업시간이 소요됨을 가정한 후, 공연 창작진 사례비 단가조사와 학술연구용역 단가를 비교
- 연구용역자 중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책임 연구원은 연출자, 연구원은 조연출과 직접 비교

□ 사례비 단가와 비교결과

- 우선, 뮤지컬 장르 연출의 경우 일인당 사례비 수준의 평균 및 중간값은 각각 185만6천원과 174만1천원으로 책임연구원 용역 단가 316만9천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오페라 연출의 경우에도 중간값이 265만9천원으로 여전히 책임연구원 용역 단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오페라 연출의 사례비 평균값은 601만6천으로 책임연구원 용역 단가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 그러나 오페라 연출의 사례비 최댓값이 1934만원이고 변동계수도 1.22로 매우 높아, 평균값으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뮤지컬 장르 조연출의 일인당 사례비 평균값은 125만7천원이며, 중간값은 96만7천원임
- 오페라 조연출의 경우 사례비 평균값과 중간값은 각각 139만4천원과 145만원으로, 연구원의 용역 단가 243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

제2절 해외사례: 영국의 공연예술 인력 인건비 기준체계

- 본 절에서는 공연예술 산업이 발전한 영국의 공연예술 인력의 인건비 기준체계 (SOLT-Equity 협약)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례비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함
- SOLT-Equity 협약
 - 런던 극장 협회(Society of London Theatre)에서는 매년 소속 공연예술인들의 인건비 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
 - 웨스트엔드 극장 예술인 조합(Equity West End Theatre Artist)외에도 안무가(choreographers), 무대, 의상 및 소품 디자이너(designers), 감독(directors) 등 여러 장르의 다양한 역할의 예술인들을 대표하여 최저임금이나 계약 조건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
 - 그 중에서도 웨스트엔드 극장 예술인 조합(Equity West End Theater Artist) 협약은 영국 웨스트엔드 지역 공연장에 소속된 배우, 뮤지컬 배우

- (Actors-Musician), 대역, 무대감독 등 역할별로 최저임금 및 인건비 수준을 합의한 협약임
- 아래의 표는 2018년 4월 ~2019년 4월 기간에 대한 영국 SOLT-Equity 협약의 공연예술인 인건비 기준체계를 정리한 것임

〈표13〉 런던극장협회 배우 및 무대감독 최저 지급표:
2018년 4월 2일부터 2019년 4월 7일까지

최소 주 8회 이상 공연	4차년도
	2018년 4월2일 - 2019년 4월 7일
그룹 A(객석 규모 1,100석 초과)	
무대조감독/ 배우	694,67 파운드
무대부감독	754,67 파운드
무대감독	814,67 파운드
그룹 B(객석 규모 800석 이상 1100석 이하)	
무대조감독/ 배우	631,91 파운드
무대부감독	691,91 파운드
무대감독	751,91 파운드
그룹 C(객석 규모 800석 미만)	
무대조감독/ 배우	568,60 파운드
무대부감독	628,60 파운드
무대감독	688,60 파운드

*직전년도와 비교하면, 무대부감독과 무대감독은 각각 60파운드 및 120파운드 인상

최소 주 12회 이상 공연	4차년도
	2018년 4월2일 - 2019년 4월 7일
그룹 A(객석 규모 1,100석 초과)	
무대조감독/ 배우	813,34 파운드
무대부감독	873,34 파운드
무대감독	933,34 파운드
그룹 B(객석 규모 800석이상 1100석 이하)	
무대조감독/ 배우	739,39 파운드
무대부감독	799,39 파운드
무대감독	859,39 파운드
그룹 C(객석 규모 800석 미만)	
무대조감독/ 배우	665,46 파운드
무대부감독	725,46 파운드
무대감독	785,46파운드

추가 수당	4차년도
	2018년 4월2일 - 2019년 4월 7일
극단 대표 및 안무가	91,38 파운드
대역	
조연	17,02 파운드
주연	26,60 파운드
대역 공연료(공연 1회 당)	
주연	26,60 파운드
조연	17,02 파운드
대기조	
주 2회 이상 공연 시 공연 1회당	26,60 파운드(주연)/ 17,02 파운드(조연)/ 8,22 파운드(그 외)
양상블 대역	62,58 파운드
보조출연자	8,22 파운드
배우 대역(비상 상황 시)	8,22 파운드
양상블 대역(비상 상황 시)	4 파운드
배우가 무대 관리 역할 수행 시	20,18 파운드
무대관리 인원 공연 시	7,26 파운드
연주자(actor-musicians) 대역	
배우가 연주자 대역 시	
주연(공연 1회당)	41,68 파운드
조연(공연 1회당)	27,76 파운드
연주자가 대역 시	
주연(공연 1회당)	26,60 파운드
조연(공연 1회당)	17,02 파운드
대기조(리허설 및 공연 시)	
그룹 A	729,40 파운드
그룹 B	663,51 파운드
그룹 C	597,03 파운드
그 외 부가지원	
웨스트엔드 극장 내 재배치 지원	163,82 파운드
식비 지원	27,42 파운드
지원보조금 상한액	
제작 실패 시	1600 파운드
웨스트엔드 극장 내 재배치 지원 - 임금삭감 시	2400 파운드
대역	1200 파운드
리허설 수당	694,67 파운드(A)/ 631,91 파운드(B)/ 568,60 파운드(C)
초과 근로 수당	
무대 공연 기간: 최저주급의 1/40	17,37 파운드(A)/ 15,80 파운드(B)/ 14,22 파운드(C)
리허설 기간: 최저주급의 1/45	15,44 파운드(A)/ 14,04 파운드(B)/ 12,64 파운드(C)
무대감독 초과 수당 상한액: 최저주급 3.33%(주급 1.5배 액의 1/45)	24,81 파운드(A)/ 22,57 파운드(B)/ 20,31 파운드(C)
기타	
일요일 공연 시: 배우 및 무대감독	63,10 파운드
일요일 공연 시: 보조 가수	56,79 파운드
일요일 공연 시: 보조출연	28,39 파운드
다큐멘터리 촬영 등 광고수입: 3회 이상 송출 시	250 파운드
다큐멘터리 촬영 등 광고수입: 영국 지역 방송 송출 시	125 파운드

다큐멘터리 촬영 등 광고수입: 영국 제외 국가 라이선스 3년 계약 시	250 파운드
홍보물 촬영: 전세계 4주간 방영 시	13,80 파운드
보조 가수(그룹 C의 최소 1/8 수준)	71,08 파운드
보조 출연(그룹 C의 최소 1/16 수준)	35,54 파운드
연금 지원-고용주	최대 고용주 부담액의 5%
그룹 A 상한액(최저 주급의 1,75배)	60,78 파운드
그룹 B 상한액(최저 주급의 1,75배)	55,29 파운드
그룹 C 상한액(최저 주급의 1,75배)	49,75 파운드
연금 지원-고용원	최소 고용원 부담액의 3%
그룹 A	36,47 파운드
그룹 B	33,18 파운드
그룹 C	29,85 파운드

연주자

내용	2018년 4월2일 - 2018년 10월 1일
그룹 A(객석 규모 1000석 초과)	
리허설	847,34 파운드
약기 1중 공연	1000 파운드
약기 2중 공연	1150 파운드
약기 3중 이상 공연	1300 파운드
그룹 B(객석 규모 800석 이상 1000석 이하)	
리허설	815,96 파운드
약기 1중 공연	1000 파운드
약기 2중 공연	1150 파운드
약기 3중 이상 공연	1300 파운드
그룹 C(객석 규모 800석 미만)	
리허설	784,30 파운드
약기 1중 공연	1000 파운드
약기 2중 공연	1150 파운드
약기 3중 이상 공연	1300 파운드

*1년에 두 차례 개정; 매년 갱신되는 협약(4월)과 연주자 협회 개정 시(10월)

연주자 소극장 협약

2018년 4월2일 - 2018년 10월 1일	극장 최대 규모의 77.5% 수준(700석 이상 800석 미만)	극장 최대 규모의 2/3 수준(700석 이상 800석 미만)
리허설	671,80 파운드	617,64 파운드
약기 1중 공연	775 파운드	666,67 파운드
약기 2중 공연	891,25 파운드	766,67 파운드
약기 3중 이상 공연	1300 파운드	866,67 파운드

□ SOLT-Equity 협약에 따른 인건비 체계

- 배우, 대역, 연주자, 무대감독의 최저주급(minimum weekly wage)을 설정
- 공연횟수 및 공연장 규모에 따라 일차적으로 인건비 수준을 구분
 - 주간 공연횟수 8회 이상 12회 미만 또는 12회 이상
 - 공연장 객석 규모 1100석 이상, 800석 이상 1100석 미만, 그리고 800석 미만으로 구분
- 무대감독의 경우에는 숙련도별로 무대조감독(Assistant Stage Manager), 무대부감독(Deputy Stage Manager), 무대감독(Stage Manager)로 구분하여 최저주급을 설정
 - 배우의 경우에는 무대조감독(Assistant Stage Manager)과 동일한 수준의 최저주급을 수령

□ SOLT-Equity 협약에 따른 인건비 수준

- 배우의 경우 주 8회 이상 12회 미만 공연하는 경우, 공연장 규모별로 최소 568파운드에서 최대 694파운드 수준의 최저주급을 수령
 - 12회 이상 공연 시 객석 규모에 따라 최소 665파운드에서 813파운드로 차등
- 무대감독의 경우에는 3단계로 숙련도에 따라 차등하여 최저주급을 설정
 - 가장 높은 무대감독(Stage Manager)의 경우, 최대 객석 규모에서 주 12회 이상 공연 시 933파운드의 최저주급을 수령하는데, 이는 가장 낮은 숙련도의 무대조감독(Assistant Stage Manager)의 동일 조건 하 최저주급 813파운드보다 약 120파운드 높은 수준
- 이외에도 대역 및 추가 수당에 대해서도 횟수별, 상황별로 자세하게 최저수당을 명시
 - 예를 들어, 초과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의 경우 공연 기간 중에는 최저 주급의 1/40 수준으로 지급
 - 리허설 주간에는 최저주급의 1/45수준으로 지급

□ 우리나라 공연예술인 사례비와 비교

- 우리나라 공연사례비와 영국의 공연예술 인력 인건비 기준체계의 가장 큰 차이는 사례비 지급 기준의 단위에 있음
 - 공연횟수 또는 축제 건수별로 지급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주당 공연횟수 및 객석 규모를 토대로 최저지급을 산정하고 지급
- 공연횟수당 지급 받는 금액으로 비교하면, 런던 웨스트 앤드 극장 배우의 가장 높은 최저지급은 1회 공연당 68파운드(원화 기준 약 11만 원) 수준에 불과
 - 무대감독의 경우 78파운드(원화 기준 약 12만원)
- 이는 우리나라 연극공연 장르의 배우 1회 공연 평균 사례비 605,000원에 비하면 약 18% 수준에 불과
- 그러나 우리나라 공연예술인에게는 공연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정기적인 사례비가 단발성으로 제공되는 것과 달리, 영국 런던 웨스트앤드의 공연예술 인력은 계약을 통해 매주 최소 813파운드의 급여를 보장 받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영국에서 최소규모 공연의 최저지급은 568파운드로, 월 2274파운드(원화 기준 약 338만원)의 최저사례비가 보장됨
- 공연횟수 또는 축제 건수에 따라 사례비가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우리나라에 비해, 영국의 공연예술인들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함을 의미
- 영국에서 공연예술인의 급여는 역할 및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 간 최저지급의 수준 차이는 그리 심하지 않음
 - 가장 작은 규모의 공연장에서 주 8회 이상 공연하는 경우, 배우 및 무대 조감독의 최저지급은 568파운드로, 같은 조건 하의 무대감독 최저지급 688파운드보다 120파운드 정도 낮은 수준
 - 공연횟수 및 공연장 규모 조건이 달라져도, 숙련도 및 역할 간 최저지급 차이는 동일하게 유지됨

- 즉, 가장 큰 규모의 공연장에서 주 12회 이상 공연하는 경우에도, 배우 및 무대 조감독의 최저주급과 무대감독의 최저주급 차이는 120파운드로 정해져 있음
- 이외에 우리나라 공연예술인에 대한 사례비 지급에서는 초과수당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지만, 영국의 공연예술인들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을 최저주급의 1/45에서 1/40수준 이상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제3절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 설문목적

- 공연예술인의 사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
- 공연예술 사례비 지원 여부, 장르별·역할별 사례비 수준 및 수입 규모 파악
- 각 장르별·역할별 적정 및 최소 사례비 수준 및 주요 사례비 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공연단체 운영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

□ 설문 일시 및 방법

- 2019년 3월 8일부터 동년 4월 8일까지 1개월간 진행
- 구글의 설문조사 양식 활용한 이메일에 의한 서면조사 방식

□ 설문 대상 및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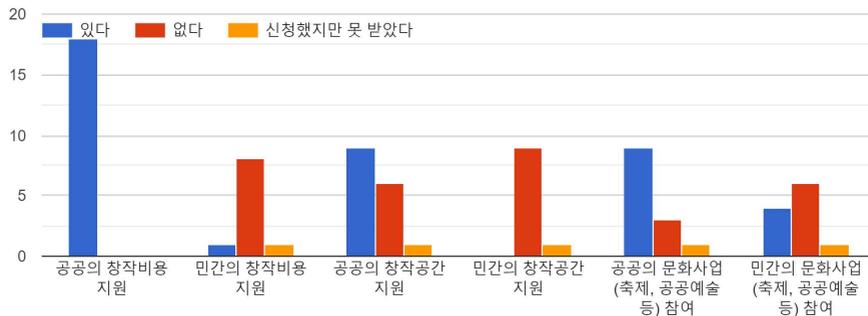
- 22개 공연단체의 운영자 또는 관리책임자
- 무용, 뮤지컬, 연극, 오페라, 전통예술 등 5개 장르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
- 그중 17개 단체가 응답하여, 약 77%의 응답률을 보임

□ 주요 내용

- 장르 및 역할별 평균·최소·최대 사례비 수준
- 공연예술인 수입 규모 및 복지혜택 실태
 - 4대 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령 여부
- 공연예술인의 희망 적정·최소 사례비 수준
- 주요 사례비 지원방식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2. 설문내용 및 조사결과

Q1. 귀 단체는 최근 1년 간(2018.1.1. ~ 12.31.)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각 해당 항목에 빠짐없이 체크(V) 해주시기 바랍니다.



Q2. 먼저, 귀 단체의 구성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역할들을 아래 내용을 이용하여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기획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작가, 배우, 무용수가 8명으로 그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Q3. 위에서 선택한 각 역할별로 제공되는 평균적인 사례비 수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결과 (공연횟수 1회 기준)

- 작가의 경우, 응답자 중 '110만 원 이상'으로 응답한 인원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만 원 미만' 응답자는 3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사례비 수준이 '9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 '70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각각 1명씩임

- 작곡가의 경우, 응답자 6명 중 '110만 원 이상'으로 응답한 인원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1명은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함
- 감독의 경우, 응답자 중 '110만 원 이상'으로 응답한 인원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만 원 미만' 응답자는 2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외 사례비 수준이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1명임
- 안무가의 경우, 응답자 중 '110만 원 이상'으로 응답한 인원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응답자는 '9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 '70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 '30만 원 미만'에 각각 1명씩 응답함
- 배우의 경우, 응답자 중 '30만 원 미만'과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인원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례비 수준이 '9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 '11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각각 2명씩임
- 무용수의 경우, 응답자 9명 중 '110만 원 이상'으로 응답한 인원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9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 응답자가 3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나머지 응답자 1명은 사례비 수준이 '30만 원 미만' 답함
- 음향의 경우, 응답자 6명 중 각각 2명씩 '110만 원 이상'과 '3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하였고, 나머지 응답자는 각각 1명씩 '70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에 응답함
- 공연기획자의 경우, 12명의 응답자 중 '110만 원 이상'과 '3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인원이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 응답자는 3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나머지 응답자 1명은 사례비 수준이 '9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 이라고 답함
- 이외에 가수, 연주가, 지휘자 등의 역할들은 설문결과를 해석할 만큼의 충분한 응답을 받지 못함

□ 해석

- 3장의 사례비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작품 창작진의 일인당 사례비 수준이

공연출연진의 일인당 사례비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작가, 작곡가, 감독의 평균 사례비 수준 응답 중 가장 많은 응답은 '11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의 경우에는 '30만 원 미만'과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인원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음
 - 위와 같은 경향은 무대관리 역할인 음향 담당에서도 확인
- 응답 결과 작가, 감독 등 작품 창작진의 일인당 사례비 수준은 쌍봉분포를 보이고 있어, 경력 등 숙련도에 따른 사례비 지급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
- 장르별로 공연 출연진에 따라 사례비 수준에 차이가 있음
- 무용수의 사례비는 다소 높은 수준에, 배우는 그보다 낮은 수준에 주로 분포

Q4. 위에서 선택한 각 역할별로 제공되는 최소 사례비 수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결과 (공연횟수 1회 기준)

- 작가의 경우, 응답자 중 '110만 원 이상'으로 응답한 인원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례비 수준이 '9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 '3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각각 2명씩임
- 안무가의 경우, 응답자 8명 중 '3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인원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1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 '9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에 각각 2명씩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1명의 응답자는 '9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함
- 배우의 경우, 응답자 중 '3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인원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례비 수준이 '9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3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70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과 '110만 원 이상'에 각각 1명씩 응답함
- 무용수의 경우, 응답자 8명 중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인원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응답자는 '30만 원 미만',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70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 '9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 '110만 원 이상'에 모두 1명씩 응답함

- 음향의 경우, 응답자 6명 중 각각 2명씩 '30만 원 미만'과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하였고, 나머지 응답자는 각각 1명씩 '70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 '9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에 응답함
- 공연기획자의 경우, 응답자 10명 중 '3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인원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9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 '110만 원 이상'에는 각각 2명씩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응답자는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 '70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에 모두 1명씩 응답함
- 이외에 가수, 연주가, 지휘자 등의 역할들은 설문결과를 해석할 만큼의 충분한 응답을 받지 못함

□ 해석

- 최소 사례비인 만큼 평균 사례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임
 - 특히, 무용수의 경우,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이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110만 원 이상'으로 응답한 인원이 5명으로 가장 많았던 평균 사례비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공연예술인에 대한 최소 사례비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체별로 최소 사례비 수준이 큰 차이를 보임

Q5. 위에서 선택한 각 역할별로 제공되는 최대 사례비 수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결과 (공연횟수 1회 기준)

- 작가의 경우, 응답자 9명 중 '110만 원 이상'으로 응답한 인원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응답자 4명은 각각 2명씩 사례비 수준이 '9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 '3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함
- 배우의 경우, 응답자 중 '110만 원 이상'으로 응답한 인원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례비 수준이 '30만 원 미만', '9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70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과에는 각각 1명씩 응답함

- 무용수의 경우, 응답자 8명 중 '110만 원 이상'으로 응답한 인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응답자는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에 각각 1명씩 응답함
- 공연기획자의 경우, 응답자 11명 중 '30만 원 미만'과 '9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인원이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3명의 응답자는 '110만 원 이상'으로 응답함
- 이외에 가수, 연주가, 지휘자 등의 역할들은 설문결과를 해석할 만큼의 충분한 응답을 받지 못함

□ 최대 사례비 수준은 대체로 평균 사례비와 유사한 응답분포를 보임

- 작품 창작진의 사례비 수준이 공연 출연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경력에 따라 최대 사례비 수준에 차이가 있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됨
 - 예를 들어, 배우 역할에서 가장 많은 응답수를 보인 최대 사례비 수준은 '110만원 이상'이며,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수를 보인 최대 사례비 수준은 '30만원 미만'임

Q6. 각 역할별 사례비 차이는 주로 무엇에 의해 결정되나요?



- 사례비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경력' 이 전체 응답의 38.9%를 차지하여, 동일 역할에 대한 사례비는 주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됨을 알 수 있음

Q14. 귀 단체 소속 공연예술인에 제공되어야 할 '적정 수준'의 사례비(또는 인건비)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결과 (공연횟수 1회 기준)

- 작가의 경우, 응답자 10명 중 '110만 원 이상'으로 응답한 인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9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인원이 2명, 나머지 응답자 2명은 각각 적정 사례비 수준으로 '30만원 이상 50만 원 미만', '3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함
- 배우의 경우, 응답자 중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과 '9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인원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적정 사례비 수준으로 '30만 원 미만', '11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에는 1명이 응답함
- 무용수의 경우, 응답자 9명 중 '110만 원 이상'으로 응답한 인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응답자는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에 2명,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에 1명이 응답함
- 공연기획자의 경우, 응답자 12명 중 '110만 원 이상'에 5명이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30만 원 미만'과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에는 각각 3명씩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1명의 응답자는 '90만원 이상 11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함
- 이외에 가수, 연주가, 지휘자 등의 역할들은 설문결과를 해석할 만큼의 충분한 응답을 받지 못함

□ 희망하는 적정 사례비는 대체로 평균 사례비에 대한 응답 결과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역할에 따른 적정사례비에서도, 작품 창작진에 대한 적정 사례비 수준이 공연 출연진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공연 출연진에 대한 적정 사례비 수준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
 - 특히, 배우의 적정 사례비는 응답결과에서 쌍봉분포를 보이고 있어, 경력과 역할 비중에 따라 희망 적정사례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 다만, 무용수의 경우에는 희망 적정 사례비로 '110만 원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때, 공연 출연진이라고 하더라도 장르별로 희망하는 적정 사례비 수준이 다른 것으로 파악됨

Q15. 귀 단체 소속 공연예술인에 제공되어야 할 '최소 수준'의 사례비(또는 인건비)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결과 (공연횟수 1회 기준)

- 작가의 경우, 응답자 10명 중 '110만 원 이상'으로 응답한 인원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인원이 3명, 나머지 응답자는 각각 희망 최소 사례비 수준으로 '30만원 이상 50만 원 미만'에 2명, '30만 원 미만'에 1명이 답함
 - 감독의 경우에도 응답자 8명 중 '110만 원 이상'으로 응답한 인원이 4명으로 가장 많았음
- 배우의 경우, 응답자 중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인원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적정 사례비 수준으로 '11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3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나머지 '30만 원 미만'과 '70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에 2명,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과 '9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에 1명이 응답함
 - 무용수의 경우에도 '9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인원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음
- 공연기획자의 경우, 응답자 11명 중 '110만 원 이상'과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에 3명이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30만 원 미만'과 '70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에 각각 2명씩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1명의 응답자는 '50만원 이상 7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함

- 이외에 가수, 연주가, 지휘자 등의 역할들은 설문결과를 해석할 만큼의 충분한 응답을 받지 못함

□ 해석

- 희망하는 최소 사례비 수준은 대체로 적정 사례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무용수의 경우, 희망 최소 사례비는 배우와 비슷한 쌍봉분포를 보임
 - 공연기획자도 이와 유사한 응답분포를 보임
 - 역할 비중 및 경력에 따라 희망하는 최소 사례비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여기에서도 작품 창작진의 희망 최소 사례비 수준이 공연 출연진보다 높게 나타났음
 - 작가의 경우 전체 응답의 40%가 희망 최소 사례비 수준으로 '11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함

Q16. 동일 역할에 있어서 적정 사례비 수준을 달리한다면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 적정 사례비 수준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70%가 경력에 따라 적정 사례비 수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답함
 - 이외에 또 다른 결정요인으로 역할 비중, 인지도, 성과 등이 중요하다는 응답 결과도 있었음

Q17. 동일 역할에 있어서 배역 또는 경력에 따라, 최소 사례비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동일 역할에 대한 최소 사례비를 배역 또는 경력에 따라 어떻게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최소 사례비 역시 경력에 따라 그 수준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56%로 가장 많음
 - 다만, 적정 사례비와 달리, 경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소 사례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
 - 전체 응답의 31%는 최소 사례비 수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Q18. 문화예술위원회가 책정하거나 제공할 '표준사례비(또는 인건비)'로서 적정 사례비 수준과 최소 사례비 중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최소 사례비보다는 적정 사례비가 표준 사례비를 위한 현실적 기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2%를 차지하였음
- 최소 사례비 개념이 표준 사례비의 기준으로 타당하다는 의견도 전체의 31%를 차지

제4절 심층면접 조사

1. 조사 개요

-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전절의 설문조사 결과는 주어진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을 단순히 정리한 것이기에, 실질적인 배경이나 문제에 대한 자세한 이해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본 절에서는 연극, 무용, 뮤지컬, 현대음악, 전통예술의 5개 분야에서 대표적인 공연예술 단체를 운영하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
 - 서면조사 방식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세부적인 사항이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한층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의견 청취가 이루어짐
 - 심층조사는 사례비의 지급실태와 결정체계, 그리고 지원방식이라는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사례비 지급 실태
 - 공연예술 활동에서 지급되는 사례비가 의미하는 바와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조사·분석
 - 각 공연분야의 창작진, 배우, 연출·기술진 등 역할별로 지급되는 사례비의 수준에 대하여 조사·비교
 - 본인이 속한 분야의 사례비를 다른 장르와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하고, 높거나 낮은 이유를 질문
 - 현재 지급되는 사례비의 수준이 적정하고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청취

- 사례비 책정 방식
 - 사례비 책정 방식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 또는 관행이나 전례, 그리고 기획사 대표의 재량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 공연예술인에 대한 사례비 수준의 차이가 경력, 지명도, 전문성 등 어떤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지 조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례비 지원 방식

- 사업 진행 절차에 있어서 사례비 금액이 지원 신청 이전과 이후 중 어느 단계에서 정해지는지 조사
- 사례비 지원금의 상·하한선이 존재하는지, 사례비 수준 결정에 있어 공연단체들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을 인정하는지, 그리고 혹시 사례비 지원 절차나 요건을 충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조사
- 사례비 지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공연단체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는지를 조사

2. 사례비 지급 실태

□ 공연예술 활동에서 통용되는 사례비의 의미와 그 적용 범위

- 사례비는 예술 활동에 대한 노력의 대가, 경제적 보상으로서 사실상 인건비와 거의 동일한 개념인 것으로 확인
- 조사결과 공연의 창작진, 배우진, 연출진 등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데 기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비용 개념으로 보고 있음
- 고용·근로관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례상 소득이나 인건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이 확인

□ 창작진, 출연진, 연출·기술진 등 역할별 사례비의 수준

- (연극계 공연기획사 대표)

- 작가와 같은 창작진의 경우에는 통상 지원금의 10%(보통 작품당 평균 400-500만원 정도)가 책정
- 지원금이 없는 경우에는 작품마다 다른데 매출의 일부를 지급받기도 함
- 연출진 경우에는 감독과 4-5명의 인원이 팀으로 함께 활동하는데, 연출팀 · 조명팀 모두 작품당 평균 400-500만원 정도의 사례비가 지급. 무대의 경우, 디자이너가 제작소를 선택하여 활동. 디자인비는 250-500만원 선, 인건비와 재료비를 아우르는 제작비도 별도로 존재하며, 셋업 · 철수비가 별도로 책정되며 일당 최하 10만원 선
- 배우의 경우, 경력이 있는 배우면 회당 15-20만원, 그렇지 않은 배우는 회당 4-5만원 선인데, 연예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높은 출연료 지급
- 기획 · 홍보업무진의 경우, 회사마다 다른데, 지원금 또는 매출액의 10%를 지급받음

- (무용계 PD/작가)

- 안무가는 이전부터 본인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안무가에게 별도로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암묵적 인식이 있음
- 다만, 안무 의뢰에 대한 안무가 사례비는 초빙하는 주최자와 작품규모에 따라 달라짐. 예를 들어, 국립단체에서 외부안무가를 초빙하는 경우, 안무가는 편당 300만원, 조안무가는 편당 200만원 정도 사례비를 지급
- 기술진 중 무대관리는 팀으로 활동하며 디자인비, 인건비와 재료비를 합친 금액, 셋업 · 철수비를 사례비로 지급함. 조명도 팀으로 활동하는데, 사례비로 셋업비는 1일 13만원, 철수비는 1일 10만원을 지급함. 이러한 기술진 크루(crew)는 일용직으로서 사례비 지급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일당 개념의 사례비로 1일 13만원을 정해 놓은 상황. 무대 · 조명 · 음향 감독의 경우, 아르코 소속 직원인 감독과 일하면 사례비가 아닌 극장 임차료로 지급하며, 극장별로 소극장 기준 2편까지 50만원, 대극장 기준 2편까지 100만원 비용이 소요. 일반적으로 아르코 외부의 무대 · 조명 · 음향 감독과 일할 경우에는 편당 200-250만원의 사례비를 지급
- 무용수의 경우에는 수석무용수 편당 150만원, 일반무용수는 편당 50-100만원의 사례비 제공, 공연 횟수가 아닌 작품 한 편 단위로 계약함. 보통 작품

한 편당 공연 횟수는 1-3회 정도임

－ (뮤지컬계 기획사 이사)

- 창작진으로는 작가와 작곡가가 있으며, 각각 작가료, 작곡가료를 지급하며, 초연 이후 공연을 할 경우 로열티 개념으로 수입의 일부를 지급함. 신인작가, 신인작곡가와 기성작가와 작곡가의 사례비는 차이가 있음
- 연출가는 뮤지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여, 특별한 배우들을 제외 하고는 창작진과 함께 사례비를 많이 받는 편임. 한편, 안무가, 음악감독의 경우에는 창작진, 연출가와는 사례비가 비슷하거나 더 적은 편임. 무대, 조명, 음향 디자이너들은 프리랜서가 많으며, 장비 렌탈과 디자인은 별도이며, 예산 역시 별도로 책정함. 중소형 규모의 뮤지컬 기준으로 각 디자이너들에게 편당 300~500만원, 많으면 500~1,000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함
- 배우진의 사례비 범위가 가장 넓게 분포. 배우 2~20명이 출연하는 중소형 창작뮤지컬의 경우, 보통 갓 데뷔한 신인은 회당 10~20만원 선으로, 주연의 경우에는 50~150만원, 조연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사례비가 책정. 1일 1-2회, 3개월 약 100회 공연을 하는 경우, 주연의 경우에는 보통 더블·트리플 캐스팅으로 30~50회 공연을 하게 됨. 위와 같은 사례비는 본 공연 기준으로, 쇼케이스의 경우에는 본 공연보다 더 적게 지급되는 편임

－ (현대음악 공연기획사)

- 초대권 위주의 연주회가 대부분이라, 작곡가, 연주가 등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 어려움. 다만, 창작산실 음악 분야의 지속연주지원 사업에서는 사례비 책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사례비를 책정 지급
- 창작곡 발표 경우, 작곡가의 작품 사용료와 지휘자의 사례비는 1백만원 이내로 책정, 연주단체(보통 앙상블) 사례비는 5백만원 이내. 재연곡의 경우, 작곡가의 사례비는 더 낮아짐. 음향기술자 사례비는 1일 30만원 정도이고, 제작비가 높아지면 20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보통 기획자와 그 크루들이 직접 음향을 담당하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
- 해외 공연의 경우에는 임차료, 오거나이징비용을 포함하여 사례비 지급하는데, 해당국가의 문화예술위원회에 문의해 보고 그에 따라 사례비를 책정하여 지급하려고 노력

- (전통예술 기획실장)
 - 국악의 경우, 작곡가와 연주가 모두 작품 프로젝트당 100-150만원 정도, 경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범위에 큰 차이가 없음. 또한, 작곡과 연주를 겸하는 경우도 많음
 - 전통무용의 경우, 원로 교수님들은 안무가로서 사례비가 더 높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안무가는 보통 작품 프로젝트당 70-100만원, 무용수의 경우에는 작품 프로젝트당 30-50만원으로 연극보다 조금 높은 편임. 예전에는 전통 무용계도 사례비를 못 받는 경우 많았으나, 요즘은 그렇지 않음

□ 공연예술 분야별 심층면접 대상자가 스스로 비교한 해당 분야의 사례비에 대한 상대적 수준 평가

- (연극계 기획사 대표)
 - 연극공연에서의 사례비가 무용, 뮤지컬, 전통예술 등 다른 공연예술 분야에 비해 가장 적고, 하나의 사업 당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도 가장 적다고 생각함. 연극이 다른 분야보다 규모가 제일 작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극공연단체들이 다른 공연예술 분야의 단체들보다 그 수가 많기 때문인 것 같다고 응답함
- (무용계 PD/작가)
 - 다른 공연예술계보다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지에 대하여 잘 모르겠으나, 연극이 가장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뮤지컬계 기획사 이사)
 - 뮤지컬의 사례비가 공연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인데, 연기와 노래, 안무를 함께하는 장르 특성 때문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뮤지컬이 상업성과 대중성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함
- (현대음악 공연기획자)
 - 현대음악 분야는 사례비의 상대적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사례비의 지급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할 필요
- (전통예술 기획실장)

- 전통예술 공연계에서 지급되는 사례비는 낮다고 생각하는데, 연극계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함. 본 회사의 경우에는 그나마 지원사업과 외부 초청 공연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체계를 갖고 있음. 따라서 업계에서 특이한 케이스인데, 소속 직원인 연주자들에게 월 130만원의 형식으로 재분배하여 지급하고 있음. 본 회사의 소속 연주가들이 그래도 연차가 높아서 공연업계에서 가장 높게 받는 클래식 분야만큼 사례비를 받는 것임. 그렇다고 월 130만원이 많다고 할 수는 없음. 심지어 다른 업체는 더 낮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사례비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현재 공연예술 분야별로 지급되는 사례비의 적절성·충분성에 대한 의견

- (연극계 기획사 대표)
 - 연극의 경우 사례비로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연극에 교차 참여를 하거나 배우들이 무대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경우도 많음. 또한 연극을 전업으로 하지 못하고, 부업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음
- (무용계 PD/작가)
 - 사례비만으로는 절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불가능. 경력에 따라 사례비를 차등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저금액에 대한 보장 없이 차등지급하기도 함. 안무가들이 다른 공연의 스태프(staff), 무용수로 참여하는 등의 교차참여가 만연하여 일정 맞추는 것이 중요함. 또한 입시·취미생활에 대한 레슨과 같은 교육 분야에서의 부업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교차참여로 많이 활동하는 경우에는 교육 관련 부업도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뮤지컬계 기획사 이사)
 - 지명도가 높지 않더라도 대학로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뮤지컬배우들은 경제적으로 괜찮은 편임. 기술스텝의 경우 회사에 소속된 기술 스태프진은 안정된 공연활동이 가능하나, 프리랜서 기술스텝은 생활이 어려운 편임. 창작진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작품을 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한데, 전

업 작가로 활동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생각함

- (현대음악 공연기획자)
 - 사례비를 실제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사례비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대부분 다른 직업을 병행하고 있음. 대학교 교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거나 레슨을 하면서 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현대음악에 대한 공연과 작곡 등이 부업이 됨. 굳이 현대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창작공연 예술분야 모두 경제적 불안정성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함
- (전통예술 기획실장)
 - 사례비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움. 대학교에 출강하거나 레슨을 하는 등 교육 분야의 일을 병행하거나 악기공방을 운영하여 좀 더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려 함

3. 사례비 책정 방식

- 사례비 책정 방식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 또는 관행이나 전례, 그리고 기획사 대표의 재량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 (연극계 기획사 대표)
 - 연극계 시장가격에 따른 사례비 책정 기준이 존재함. 다만, 배우진의 경우 지명도·인지도에 따라 사례비가 크게 늘어남
 - (무용계 PD/작가)
 - 무용계는 무료초대가 많고 티켓판매 수입만으로 공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지원금이 중요하고, 결국 사례비는 스폰서의 지원금에 따라 정해짐. 다만, 지원금 금액에 따라 관례상 지급되는 사례비 평균금액이 형성됨
 - (뮤지컬계 기획사 이사)

- 사례비에 대하여 업계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음. 다만, 배우진의 경우에는 기존에 동일한 작품에 출연했던 배우라도 지명도·인지도가 높아지면 사례비가 늘어남
 - (현대음악 공연기획자)
 - 사례비를 지급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에서 창작산실 음악 분야의 지속연주지원 사업이 정하고 있는 사례비 책정기준이 지침이 될 수 있음
 - (전통예술 기획실장)
 - 전통예술 공연만으로는 수익을 거두기 어려워, 많은 단체가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함. 지원금 규모에 비례하여 사례비도 어느 정도 증감하는데, 이렇게 책정된 사례비가 시장가격이 되었음
- 공연예술인에 대한 사례비 수준의 차이가 경력, 지명도, 전문성 등 어떤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지 조사
- (연극계 기획사 대표)
 - 작가와 같은 창작진의 경우에는 역할의 중요성 인정, 작품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대우를 해주는 편. 연출·기술진의 경우에는 팀의 전문성, 지명도·인지도에 비례하여 사례비가 달라짐. 배우진은 주·조연을 떠나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연극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을 대우해주려는 분위기
 - (무용계 PD/작가)
 - 무용수는 경력과 상관없이 프로페셔널로서 일률적으로 사례비를 지급받음. 다만, 공연에서의 출연시간, 안무에 기여를 많이 하는 수석 무용수, 무용수로 출연하는 조안무가와 같이 공연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출연진에게 차등 지급하는 경우 있음
 - (뮤지컬계 기획사 이사)
 - 창작진, 연출·기술진의 경우, 지명도·인지도 또는 최근 흥행 성적에 따라 사례비를 책정. 배우진의 경우에도 경력보다는 지명도·인지도에 따라 결정되며, 최근 흥행 성적도 고려됨

- (현대음악 공연기획자)
 - (현대음악 분야의 특성상 해당 사항 없다고 응답)
- (전통예술 기획실장)
 - 경력 또는 공연에서의 역할·자질에 따라 사례비에서 약간의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사례비에 큰 차이가 없음. 공연단체가 오랫동안 함께 공연하고 창작하는 동인회 성격을 띠고, 경력도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기에, 일용직인 일일 무대스텝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례비는 큰 차이 없이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처럼 보임. 전통예술 공연단체의 상당수가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 예산이 아주 적기 때문에 작곡가, 연주가, 연출·기술진, 출연진들 중에서 일부만 많은 사례비를 받아갈 수 없는 구조임

4. 사례비 지원제도 운영방식

□ 사업 진행 단계에서 사례비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 과정

- (연극계 기획사 대표)
 - 사례비 항목을 포함한 세부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 승인 단계에서 지원금 총액을 조정함. 조정된 지원금 총액을 교부(집행)하는 단계에 사례비 총액, 기능별·역할별 사례비 단가도 함께 조정되는 방식임
- (무용계 PD/작가)
 - 사례비 항목을 포함한 세부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 승인 단계에서 지원금 총액을 조정함. 다만, 조정된 지원금 총액에 대해 역할별 사례비 단가가 반드시 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례비는 업계 수준을 어느 정도 따라서 책정하려 함. 조정된 지원금 총액에 대하여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주제, 인원 등 항목이 당초 내역에서 크게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임. 그런데 제작비는 가격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에 동원되는 인력 규모에 따라 사례비 단가를 줄이는 경우도 많음

- (뮤지컬계 기획사 이사)
 - 세부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 승인 단계에서 지원금 총액을 조정하는 것은 위 연극계, 무용계의 경우와 동일함. 다만, 뮤지컬의 경우에는 지원금 규모가 작더라도 공연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사례비가 책정됨. 단, 본 공연이 아닌 쇼케이스의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적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각 사례비 책정됨
- (현대음악 공연기획사)
 - 사례비 항목을 포함한 세부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 승인 단계에서 지원금 총액을 조정함. 조정된 지원금 총액을 교부(집행)하는 단계에 사례비 총액, 기능별·역할별 사례비 단가도 함께 조정되는 방식임
- (전통예술 관련 기획실장)
 - 사례비 항목을 포함한 세부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 승인 단계에서 지원금 총액을 조정함. 조정된 지원금 총액을 교부(집행)하는 단계에 사례비 총액, 기능별·역할별 사례비 단가도 함께 조정되는 방식임

□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사례비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책정기준

- (연극계 기획사 대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원에서 시장가격과 별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비 책정기준이 있다고 봄. 지원금을 받게 되면 증빙 편의 때문에 이를 사례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신청 단계에서 신청한 지원금 총액이 거의 항상 하향 조정되는 편이라 결국 사례비 금액도 따라서 하향 조정됨. 그럼에도 지원금을 받는 연극 공연의 경우에는 업계의 일반적인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사례비가 지급되는 편임. 사례비 책정 금액에 대하여 상한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며, 하한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지원금을 받으면 사례비의 최소 금액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생각함. 티켓 판매금액이라는 자체수입 외에 지원금을 별도로 받게 되면 극단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위해 역할별로 동등하게 사례비를 상향하여 지원금을 배분하는 분위기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문화예술위원회가 수용하는 입장인지는 불분명한데,

공연계 사례비의 실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무용계 PD/작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무용계를 비롯한 모든 공연예술 분야에서 신청 받은 사업을 심의할 때 그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알고 있음. 사례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부적으로 심의 되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 책정기준이 있다고 생각함. 이에 최저사례비에 대한 명시적인 책정기준이 있으면 사례비가 지급되는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봄. 무용계는 과거에 안무가와 무용수에게 사례비를 지급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이 많았고, 최근에는 그러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 (뮤지컬계 기획사 이사)

- 뮤지컬의 경우에는 지원금 규모와 상관없이 본 공연규모에 따라 사례비가 책정되어 공연 사업을 운영하며, 독립성과 자생력이 갖추고 있는 편임. 물론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사례비 수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적은 편임.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의 사례비가 너무 높게 형성되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례비에 상한을 도입하여 사례비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임

－ (현대음악 공연기획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원에서 정하고 있는 사례비 책정에 대한 상한선이 있음. 이러한 책정기준에 작곡가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대체로 역할별 중요도에 따라 공평하게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생각함. 다만, 연주단체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전통예술 기획실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원에서 별도의 사례비 책정기준이 있다고 보지는 않음. 각 공연예술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지원사업을 심사할 때, 분야별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사례비 책정기준에 있어서 구체적인 상·하한선이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요구하는 지원금 지급 조건과 단체의 재량에 대한 허용
 - (연극계 기획사 대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사례비의 개별 단가에 대해서 세세히 감독하고 파악하며, 업계에서의 시장가격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 연예인 섭외, 공연 횟수 등 재량의 허용 범위도 높다고 생각. 예를 들어, 정해진 공연 횟수만 채우면 되고, 공연 횟수를 늘리게 하여 회당 단가를 낮추는 것과 같은 요구는 없음
 - (무용계 PD/작가)
 - 세금을 재원으로 한 기금으로 공연예술 단체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일정한 지급요건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대체로 조건은 까다롭지 않다고 봄
 - (뮤지컬계 기획사 이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요구하는 요건은 필요한 행정절차이며,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함. 지원금 항목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량에 맡기나 집행하면서 감사를 꼼꼼히 함
 - (현대음악 공연기획사)
 - 행정적으로 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세금으로 지원받아 운영하는 만큼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전통예술 기획실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사례비 책정·지급에 있어서 불필요한 개입은 없다고 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
 - (연극계 기획사 대표)
 - 대중성·상업성 있는 작품이 아닌 순수 창작예술을 지원하는 것이라 일회성 지원 정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함
 - (무용계 PD/작가)

- 블라인드 심사라고 하나 신청서에 참가자들의 나이·성별·경력을 모두 기입하게 되어 있어 익명성이 떨어진다고 봄. 게다가 지난번에 지원받은 사업의 성격이 이번에 신청한 사업과 유사하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 (뮤지컬계 기획사 이사)
 - 지원금 중 제작진행에 따른 내부 인건비가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으면 함
- (현대음악 공연기획사)
 - 사업을 신청한 기획·경영 대표자 자부담 10% 이상 요건 때문에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 어려움 있음. 한편, 사례비 지원을 위한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 또한, 사례비 책정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여 상한선에 차등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임. 위촉과 재연, 편성에서 독주와 앙상블, 음악의 길이(분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길 바람
- (전통예술 기획실장)
 - 전통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예술 분야에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단체별 최대 지원금 총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공연예술 단체의 참여 인원 규모에 따라 지원금 총액 책정이 달라졌으면 함. 절대적인 지원 금액이 늘어났으면 하고, 수상실적, 최근 몇 년간 창작하여 공연한 작품 수 등을 고려하여 단체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으면 함

5. 심층면접 조사결과 비교

□ 심층면접 조사결과 요약 및 비교

- 사례비의 상대적 수준: 연극 부문의 사례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편이고 뮤지컬계가 가장 높다고 평가
 - 무용계의 사례비 수준은 연극 부문보다는 높고, 전통예술 부문은 연극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함

- (현대)음악계에서는 사례비의 상대적 수준보다는 정상적인 전달과정 안착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의견 줌
- 사례비 수준의 적절성: 뮤지컬 부문을 제외한 모든 공연기획 운영진들이 현재의 사례비 지원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답하였음
 - 사례비 책정방식: 연극, 뮤지컬, 전통예술 부문에서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시장 가격이 사례비 수준을 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반면, 무용계는 관행이나 전례를 따른다고 말함
 - 사업지원 요건에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는 의견도 있음(현대음악 부문)
 - 사례비 결정요인: 공연예술인에 대한 사례비 수준의 차이가 경력, 지명도, 전문성 중 어떤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장르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연극: 창작진에게는 작품 당 미리 정해진 기준에 의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고, 연출·기술진은 팀의 전문성, 지명도, 인지도에 비례하여 사례비가 결정. 배우는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무용: 무용수의 사례비 수준은 대체로 경력과 무관하며 일률적인 방식에 따라 사례비가 지급되는 편인데, 다만, 공연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출연진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이 적용됨
 - 뮤지컬: 창작·연출진의 사례비 수준은 주로 지명도나 인지도 또는 최근 흥행 성적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배우의 사례비 결정에서도 경력보다는 지명도와 인지도, 최근 흥행성적 등이 중요함
 - 전통예술: 경력이나 공연에서의 역할, 자질 등에 따라 사례비 수준이 차등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지급금액에 큰 차이는 없음
 - 현대음악: 특별한 결정요인 없다고 응답
 - 사례비 지원 금액 결정과정과 관련해서 뮤지컬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금 교부·집행 시 구체적인 사례비 총액과 각 역할에 따른 사례비 단가가 동시에 조정된다고 응답하였음

- 뮤지컬계에서는 지원금보다는 본 공연의 규모에 따라 사례비가 책정되며, 사업진행 절차와 사례비 결정과정은 큰 관련이 없다고 말함
- 현대음악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문예위 차원의 암묵적인 사례비 책정기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사례비의 상·하한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단체가 많았음
 - 뮤지컬 공연단체는 지원금 규모에 따라 사례비가 영향 받을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은 편이며, 배우 사례비에 대한 상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힘
- 지원금 지급 요건에 관해서는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절차도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하며, 사례비 책정에서 단체의 재량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말함
- 이외에도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익명성에 기초한 심사과정의 중립성 보장, 그리고 사례비 차등 지급을 위한 세밀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공연 참여 인원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 총액이 결정되고, 단체의 공연실적에 따른 지원금의 차등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14> 심층면접 조사결과 비교

주제	장르	연극	무용	뮤지컬	현대음악	전통예술
		사 례 비 역할별 사례비 지급 수준 실 태	(창작진) -지원금의 10% -작품당 평균 400-500만원 -지원금이 없 는 경우 매출 의 일부를 지 급	(안무가) -사례비에 대 한 인식 낮음 -주 최 자·작 품 규모 따라 사례비 다름 -국립단체 초 빙시, 안무가 편당 300만원, 조안무가 200 만원	(창작진) -작가·작곡가 에게는 작가 료·작곡가료 지급, 초연 이후 로열티 지급	-사례비 지급 문화 미정착 -지속연주지 원사업의 사 례비 책정기 준에 따라 사례비 지급
(연출·기술진) -연출팀·조명팀 작품당 평균 400-500만원 -무대디자인비 는 250-500만 원 제작비 (인건비·재료 비)는 별도 -셋업·철수비 는 일당 최하 10만원 선	(연출·기술진) -무대관리팀: 디자인비, 인 건비·재료비, 셋업·철수비를 사례비로 지급 -조명팀셋업비 1일13만원,철 수비1일10만원 -기술진 크루: 1일 13만원, 노조가 정함 -무대·조명· 음향감독 편 당 250만원선 -아르코 직원 은 극장 입차 료로 지급		(연출·기술진) -연출진과 창 작진의 사례 비는 높은 편 -안무가, 음악 감독은 비슷하 거나 낮은 편 임 -무대·조명· 음향 디자인 은 중소형 규 모 뮤지컬 기 준 편당 300 -500만원 선	(창작곡 발표) -작곡가 작품 사용료,지휘자 사례비 1백만원 이내 -재연곡 연주 는 사례비가 더 낮음 -연주단체 사 례비는 5백 만원 이내 -음향기술자 1일 30만원 보통 기획자 와 크루들이 직접 담당	(전통무용) -일반 안무가 프로젝트당 70-100만원 →원로교수 는 더 많음 -무용수는 프로젝트당 30-50만원	
(배우진) -일반 배우 회	(소극장 2편		(배우진) -사례비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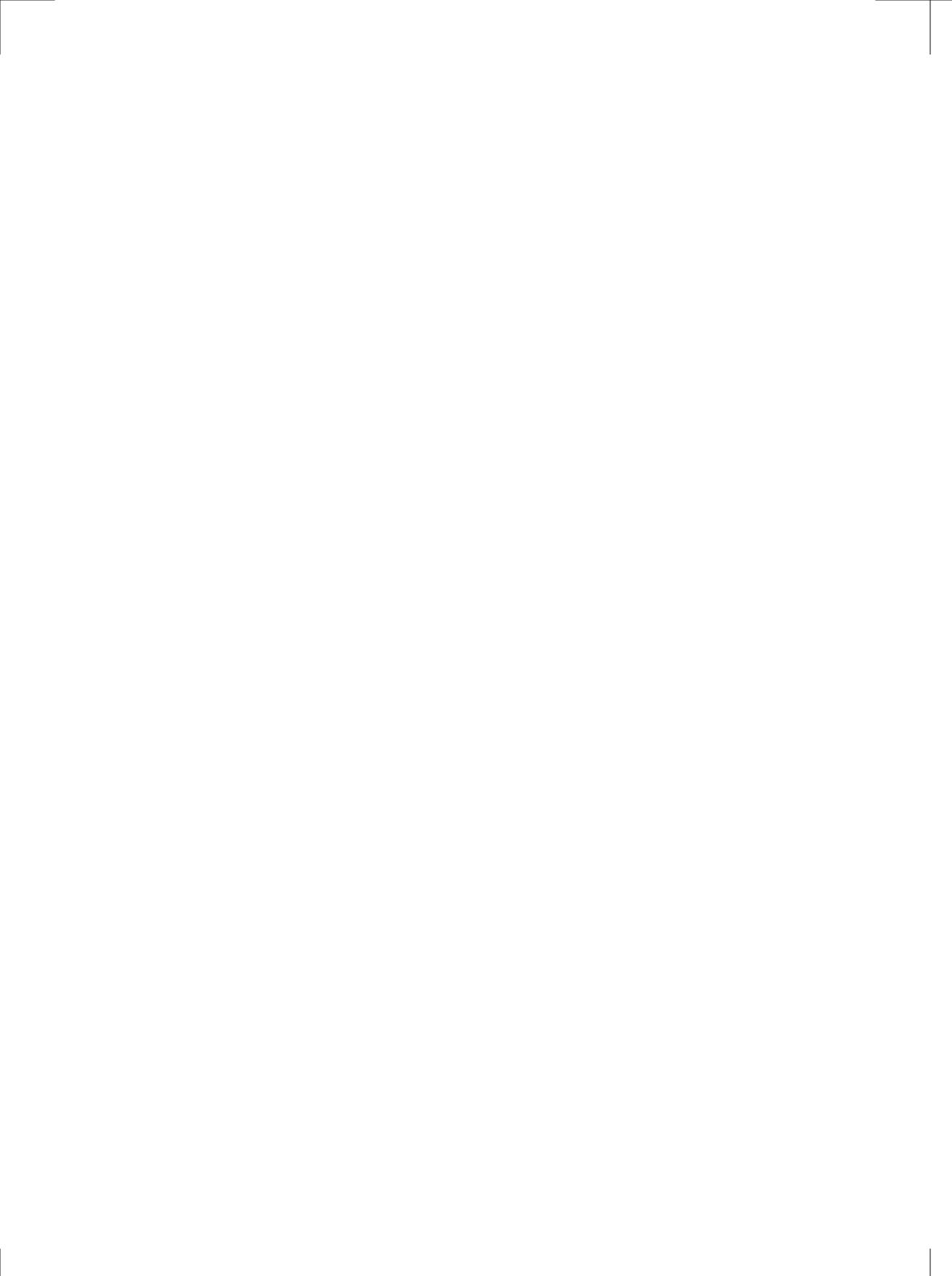
	당 45만원 경 력 배우는 회 당 15-20만원 →연예인은 예외적 대우	까지 50만원, 대극장 2편까 지 100만원)	넓음(중소형 창작뮤지컬 기 준 주연 50-150 만원, 조연 100 만원 이하, 신 인 10-20만원)		
	(기획·홍보진) -지원금 또는 매출액의 10 %를 지급	(무용수) -수석무용수 편당 150만 원 -일반무용수 편당 50-100 만원 (작품 당 1-3 회 공연)		(해외 공연) -임차료·오거 나이징비용은 해당국 문화 예술 위원회 기준에 따라 지급	
사례비의 상대적 수준 평가	가장 적은 편	연극계보다는 나은 편	보통	전달과정 인착 이 더 중요	연극계와 비슷 한 편
사례비의 적절성· 충분성	불충분	불충분	보통	불충분	불충분
사례비 책정방식	시장가격	관례	시장가격	지속연주지원 사업에서 정하 는 책정기준	시장가격
사례비 결정요인	(창작진) -작품당 일정 금액 지급	(무용수) -경력과 무관 일률적 사례비 지급	(창작·연출) -경력과 지명 도, 최근 흥 행성적에 비 례	해당사항 없음	-경력 또는 공 연에서의 역 할 자질에 따 라 차등 지급 가능하나 실제 로 큰 차이 없 음
	(연출·기술진) -팀 전문성, 지명도·인지 도에 비례				
	(배우진)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배우진) -경력 -지명도·인지			

			도·최근동행 성적에 비례			
사 례 비 지 원 제 도 운 영 방 식	사례비 지원 금 결정과정	지원금 교부 (집행)시 사례 비 총액과 역 할별 사례비 단가를 함께 조정	지원금 교부 (집행)시 사례 비 총액과 역 할별 사례비 단가가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금 규모보 다는 본 공연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사례 비가 책정. 사업 진행절차와 사례비 결정과 정은 큰 관련 없음	지원금 교부 (집행)시 사례 비 총액과 역 할별 사례비 단가를 함께 조정	
	문예위의 사 례비 책정기 준	-문예위 차원의 임목적인 사례 비 책정기준이 있다고 생각 -최소보장금액 및 상한선도 있다고 판단	-문예위 차원의 임목적인 사례 비 책정기준이 있다고 생각 -최소 사례비에 대한 명시적 기준 필요	-지원금 규모에 따라 사례비가 영향 받을 수 있으나 가능성 낮음 -배우 사례비에 상한도입 필요	-문예위 차원의 임목적인 사례 비 책정기준상 한선이 있다고 생각 -연주자보다는 작곡가 위주의 고려	-문예위 차원의 임목적인 사례 비 책정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임 -사례비의 상 하한선도 없다 고 생각
	지원금 지급 요건 및 단 체의 재량 허용	사례비에 대한 세세한 감독. 단체의 재량도 적절히 인정됨	자금요건 까다 롭지 않으며, 당연한 절차	행정절차 합리 적이며 필요 단체의 재량도 적절히 인정됨	다소 까다로운 절차이나 필요 성 인정	불필요한 개입 은 없음
지원금 운영방식 개선의견	-일회성 지원의 한계 개선	-심사의 익명 성 보장		-세밀한 차등 지원 기준필요	-공연참여 인 원 규모에 따 라 지원금 총 액 결정 필요 -공연실적에 따라 지원금 차등화 필요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연예술 분야 사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예기금의 공연예술분야 사례비 집행 자료를 이용하여 장르별·역할별 사례비 수준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른 분야의 인건비 수준, 특히, 영국의 공연예술분야 사례비 기준체계와 비교하였음
 - 또한 공연단체 실무담당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사례비 수준의 적정성 평가와 지급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정리하였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집행 결과 중 2015년과 2016년의 공연예술창작 산실육성지원 사업과 공연예술행사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자, 제작자, 실연자, 기술 스태프 등에 지급된 사례비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중앙값을 추정하고, 각 그룹별 사례비의 표준편차, 변동계수와 같은 지표를 통해 사례비 수준의 격차와 변동성도 함께 분석하였음

- 공연예술인인의 1회 공연에 대한 정확한 사례비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특성 자료와 사례비 정산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data screening)을 통해 통계분석에 이용할 사례비 자료를 별도로 구축하였음
 -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연예술분야 사례비는 장르와 역할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르별로 볼 때, 뮤지컬, 오페라, 관현악의 경우 대다수의 역할에 대한 일인당 평균 사례비가 1백만원을 크게 상회하여, 평균 사례비 수준은 다른 장르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역할별로는 작곡, 음악 감독, 작가, 안무가 등 창작진의 평균 사례비가 대체로 가장 높고, 무대 관리와 같은 기술진의 사례비가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사한 역할이라도 어느 장르에 속하는지에 따라 사례비 수준은 큰 차이를 보였으며, 동일 장르 내 동일 역할에 있어서도 공연예술인에 대한 사례비 수준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음
 - 특히, 관현악 연주자나 뮤지컬 배우, 오페라 가수 등은 사례비 변동계수가 1이상으로 지명도·인기·예술적 숙련도에 따라 사례비 수준이 크게 차이는 나는 대표적인 직능 분야임이 실제 사례비 정산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음

- 이 세 가지 직능은 평균사례비 수준도 높아 역할 간 및 역할 내 불평등 현상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분야에 해당하여, 과도한 사례비 지급이나 격차 확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국내의 다른 분야 인건비 수준(소프트웨어 표준노임단가, 학술용역노임단가)과 비교했을 때, 공연예술 분야의 사례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보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사례비의 점진적인 인상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공연예술 산업이 발전한 영국의 공연예술 인력 인건비 기준체계(SOLT-Equity 협약)와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도 주당 공연횟수 및 객석 규모를 토대로 최저주급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영국처럼 사례비 지급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공연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비정기적이고 단발적인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영국처럼 일정한 계약을 통해 최소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방향의 노력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임
 - 영국에서 공연예술인의 급여는 역할 및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 간 최저주급의 수준 차이는 그리 심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뮤지컬이나 오페라 부문에서 나타나는 사례비 수준의 격차 문제는 향후 합리적으로 완화해가는 것이 필요함
 - 이외에 우리나라 공연예술인에 대한 사례비 지급에서도 초과수당의 개념이 도입되어, 일정한 협약에 의해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공연예술인의 사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연단체 운영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희망하는 적정 사례비는 대체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평균 사례비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적정사례비 수준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70%가 경력에

따라 적정 사례비 수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답하였고, 이외에 역할비중, 인지도, 성과 등도 중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음

- 최소사례비 역시 경력에 따라 수준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56%로 가장 많았으며, 적정사례비와 달리, 경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소 사례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31%) 존재하였음
- 최소사례비보다는 적정사례비가 표준사례비를 위한 현실적 기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2%를 차지하였는데, 이 같은 응답결과는 추후 표준사례비 기준체계 수립에 적절히 참고가 될 필요가 있음

□ 5개 공연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단체를 운영하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면조사 방식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세부적인 사항이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음

- 먼저, 뮤지컬 부문을 제외한 모든 공연기획 운영진들이 현재의 사례비 지원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답함으로써, 공연예술 현장에서 공공기금을 통한 사례비 지원 규모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지원금 교부·집행 시 구체적인 사례비 총액과 각 역할에 따른 사례비 단가가 동시에 조정된다는 점으로부터, 공연단체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는 경우 경직적인 제작비 대신 주로 공연예술인의 사례비를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현실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공연예술인의 경제적 지위 안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행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대체로 사례비의 상·하한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추후 문예위 차원의 사례비 기준체계 수립 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외에 지원금 총액 결정 시 공연 참여 인원의 규모를 반영하고, 단체의 공연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하는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끝으로,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의 사례비 수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문예기금이 지원하는 특정 공연예술 사업에 선정된 단체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서 조사범위 선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문예위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공연단체들은 대부분 공연실적도 많고 지명도 높은 공연예술인들 다수가 참여하며 경영상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단체가 대부분 이기에, 이들을 기반으로 조사된 결과가 전국의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연 단체의 일반적인 현실을 잘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중앙의 공공기금 지원 사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공연단체 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문예위의 창작산실육성지원과 공연예술행사지원 사업을 통해 사례비를 제공 받는 대상이 주로 중견예술인이나 기성 공연단체에 국한되기에, 청년이나 신진 예술인들의 사례비 지급 실태 파악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됨

참고문헌

1. 2017 공연예술실태조사 (2016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2. 구문모 외 (2010), 공연예술 시장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접근방안 연구, 문화예술위원회
3. 오세곤 외 (2015), 공연예술 전문인력 표준인건비 산출연구 : 연극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예술인복지재단
4. 이용관 외 (2010), 2010년 문화예술분야 단가조사, 문화예술위원회
5. 장지연 (2014), 공연예술계 노동실태 : 우리에게도 테이블이 필요하다, 국회토론회 자료집
6. 황준욱 · 이승렬 · 은수미 · 안주엽 · 이승엽 · 이상민 · 이호영 · 용호성 (2008), 공연예술 전문인력구조와 정책지원 - 연극,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7. 황준욱 · 안주엽 · 이정현(2014), 공연예술 직업분류체계 연구-예술 직업군 실태조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8.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gokams.or.kr)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10. 한국예술경영인협회, 홈페이지(www.artsmanagement.or.kr)